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 2020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용[유형1]

####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실 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욕 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댁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 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ルコルムサム

2020년 3월

기그브리인려버스

####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44-287-8185, 8317, 8215, 8393, 8138, 8125)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02-880-6320)

						/1100	)/(I-7		711 642664		
	가구 🏻	대널 ID	1		- 1차 가구: - 3차 신규가구: -10차 신규가구:	03	- 2차 신규가 - 4차 신규가 - 11차 신규기	구: 04 }구: 11	-1차 기 -첫 번째 분 -두 번째 분 -세 번째 분	리가구: 02	
	«ΟΙπ.IIΕΑΙΟΙ Δ	. 112 70	= 0171		-12차 신규가구:		-13차 신규기	구: 13		<b>ΨΟΙ</b> ΤΙΙΕΑΙΟΙ	
	<b>※인포시트상의 숫</b>	사들 그네	노 에기		※인:	포시트상의 숫자	글 그대도 이기			*인포시드성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주소지	행정코드						시	·도		구·시·군	동· 읍· 면
ナエベ	상세주소	-	_통·리	_번지		 아파트동층			호) <b>&amp;</b>		
					응답지	· 1				응답지	ł 2
가:	구주 성명		성명			가구원 번 호		Ą	병명		가구원 번 호
			휴대폰					휴	대폰		
조사표완	료 소요시	간	총		_분	총방문	<b>문횟수</b>	총		회	
1차방문	월 _	일	시	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	(번호기재):		※미완사유코드
2차방문	월_	일.	시	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	(번호기재):		) 비해당(완료) ) 늦은 귀가 ② 장기출타
3차방문	월 _	일	시	<u>변</u>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	(번호기재):		) 경기됩니 ) 부재중(원인미파악) ) 일부문항 미완
4차방문	월	일	시	_ 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	(번호기재):	(6)	》조사거부 》이사(주소추적불가)
최종방문	월 _	일	시	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	(번호기재):	(8	》 사망으로 인한 가구소실 ③ 기타 추적불가사유 ③ 기타
조사원 0	l름		지도원	확	인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	호기재):		지도원	(인)

## I. 가구일반사항

본 조사의 조사시점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일반사항은 [인포시트]의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가구원 변동이 없는 경우 반드시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옮겨 주셔야 합니다. 단, 가구주가 바뀐 경우 바뀐 가구주를 가구원번호 1번에 기입.

문1) 귀댁에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 2019년 1년 동안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을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단,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 이유로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은 가구원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명

	개인 패널ID	가원 번호	이름	듄	<del>-</del> 2)			문3)		듄	<del>!</del> 4)			문5) 교육	수준
71 7 01	개인 패틸ID	번호	И <del>П</del>	가구주의	악의	관계		성별		태어난				<del>문</del> 5-1)	문5-2)
가 <del>구</del> 원 진입 차수	※인포시트와 지침서를 참고하여 부여 ※ 인포시트상의 개인패 널ID를 그대로 이기하 고 14차 지인가구워의	※ 순서 대로 기입	가구원 이름	<ul> <li>* 가구주와의</li> <li>으로 기입<sup>3</sup></li> <li>와의 관계<sup>3</sup></li> <li>코드번호</li> <li>가구주 정의</li> </ul>	후 <b>아리</b> <b>王]를</b> 기입	배 [가 <sup>-</sup> 참고호	<b>구주</b> ŀ여	① 남 ② 여	フ (t	-민등록상  재하여 주 반드시 [인   확인)	십시오			① 미취학 (만 7세미만) ② 무학 (만 7세이상) ③ 초등학교	① 비해당 ① 재학 ② 휴학 ③ 중퇴 ④ 수료
-15차 가구진입 가구원:15	고, 14차 진입가구원의 경우 새로운 개인패널 ID를 부여			대주와는 관 를 실질적으 <u>실상 생계를</u> 사람	∤계없(	ᄓᄀ	가구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⑥ 전문대학 ⑦ 대학교	⑤ 졸업
-그 외는 인포시트상 의 숫자를 그대로이기				<u>사임</u> 가구주와의 관계		구주외 계 코			:	생년 <b>(</b> 生年)		생 <b>(</b> 生	월 月)	⑧ 대학원(석사) ⑨ 대학원(박사)	
		1			0	1	0								
		2													
		3													
		4													
		5													
		6													
		7													
		8													
		9													

#### 문 2) 가구주와의 관계표

Λ1	^	기기자
()1	W.	ノアデデ

001. 가구주의 아버지 002. 가구주의 어머니

005. 가구주의 조부 006. 가구주의 조모

011. 가구주의 첫째 자녀

012. 가구주의 둘째 자녀 013. 가구주의 셋째 자녀

(넷째 = 14, 다섯째 = 15, ...)

031. 가구주의 형제/자매 (첫 번째 사람 = 31, 두 번째 사람 = 32, ...)

051. 가구주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 번째 사람 = 51, 두 번째 사람 = 52, ...)

11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112.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 = 113, 넷째 = 114, ...)

121.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1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 = 123, 넷째 = 134, ...)

131.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 132.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 = 133, 넷째 = 134, ...)

997. 기타 친인척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번호)

998.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번호)

020. 가구주의 배우자

003. 가구주의 배우자의 아버지 004. 가구주의 배우자의 어머니

007. 가구주의 배우자의 조부 008. 가구주의 배우자의 조모

02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0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023.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배우자

(넷째 = 24, 다섯째 = 25, ...)

04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 (첫 번째 사람 = 41, 두 번째 사람 = 42, ...)

06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 번째 사람 = 61, 두 번째 사람 = 62, ...)

211. 가구주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212. 가구주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 = 213, 넷째 = 214, ...)

221. 가구주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222. 가구주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 = 223, 넷째 = 224, ...)

231. 가구주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232. 가구주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 = 233, 넷째 = 234, ...)

가구원	문6) 장애종류 및 정	청도	ㅁㄱ ㅎ이시네	ㅁ아 조그	모아 도기어브
번호	<del>문6-1</del> ) 장애종류	<del>문6-2</del> ) 장애정도	문7) 혼인상태	문8) 종교	문 <b>9</b> ) 동거여부
※순서대 로 기입	(① 비해당(비장애인) (① 지체장애 (② 정신장애(② 뇌병변장애 (④) 신장장애(③ 시각장애 (⑥ 심장장애(④) 청각장애(⑥) 언어장애 (⑥ 건장애(⑥) 언어장애 (⑥ 장신지체 (⑥) 안면장애(지적장애) (⑥ 장루·요루장애(자페성장애)(장구을장애(자페성장애)(⑥ 간질장애(하 나를록장애인(보훈처등록장애인포함)  ※ 기장최근에 판정받은 장애유형을 기록 ※ 중복장애의 경우, 주요 장애 한 기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등급이 같은 경우에는 생활에 더 큰 어려움을 주는 장애로 표시하면 됩니다	(이 비해당(비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급)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4~6급) (3) 비등록 장애인 (보훈처등록 장애인 포함)	① 비해당 (18세 미만)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별거 ⑤ 미혼 (18세 이상, 미혼모 포함) ⑥ 기타(사망등)	① 있음 ② 없음	① 같이 살고 있다. ② 다른 지방에 근무(국내) ③ 해외 근무 중 ④ 학업(해외 유학 포함) ⑤ 입원, 요양 ⑥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⑦ 가출 ⑧ 분가 ⑨ 사망 ⑩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① 기타(군복무 등) ※ 주거지를 정하지 않은 여행 등 일시적인 비동거자는 동거자로 구분합니다.
1					
2					
3					
4					
5					
6					
7					
8					
9					
		•	I.		

	급여종류	1)수급여부	2) 수급형태 1	3) 수급형태 2		
	① 생계급여		① 해당없음 ① 일반수급가구 ② 조건부수급가구 ③ 특례가구	① 해당없음 ① 가구원 전부 수급 ② 가구원 중 일부 수급		
문11) 맞춤형 급여	② 의료급여		① 해당없음 ① 의료급여 1종 ② 의료급여 2종 ③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① 해당없음 ①기구원 전체 의료급여 ②기구원 일부 의료급여		
수급형태	③ 주거급여		① 해당없음 ① 임차급여(특례포함) ③ 수선유지급여(특례포함)			
	④ 교육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수 명			

③ 부자

④ 조손가구 또는 소년소녀가장

⑤ 기타

#### 〈 용어 해설: 가구형태 〉

• 단독: 1인 가구

문10)

- 모자: 어머니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만 구성된 가구(단,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부자: 아버지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만 구성된 가구(단,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조손가구 또는 소년소녀가장: 18세 미만의 자가 가구주로 있는 가구 또는 만 65세 이상인 노인(할머니, 할아버지)과 같이 사는 경우 노인을 가구주로 하는 가구
- 기타: 위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

가구형태

① 단독

② 모자

#### 〈 응어 해설: 의료급여 수급형태 〉

- 의료급여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세대,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중 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으로 <u>가구(세대) 모두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가구</u>
- 의료급여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세대 등으로 <u>가구(세대) 모두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가구</u>

......

#### 〈 유의사항: 맞춤형 급여 수급형태〉

- ※ 맞춤형 급여(생계, 의료, 주거) 수급형태는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2019년 12월 31일 기준 수급여부 및 수급형태를 확인하고, 교육급여는 응답자의 협조를 얻어 교육청에 문의하여 수급여부 및 수급자 수를 기입합니다.
-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수급이면 수급가구로 파악합니다.

## II. 건강 및 의료 A

#### ※ 가구원 번호와 이름은 2쪽의 순서 및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b>14</b> )				문3)	문4)
가구원	이름	문1) 2019년 12월 31일 기준	<b>⊒2\ 201</b> €	9년 1년 중 의	크기과 이요	2019년 1년 중	2019년 1년 중
번호	│ <del>│</del> │	건강상태	<del>E</del> 2) 2013	7인 1인 중 의	프기딘 이중	병원에 입원한	주로 이용하는
		1684				이유	의료기관 형태
※ <b>2</b> 쪽의	가구원	① 아주 건강하다	문2-1)	문2-2)	문2-3)	① 비해당	① 비해당
기구원 번호	이름	② 건강한 편이다	외래진료횟수	입원횟수	입원일수	① 지병/질병	① 종합, 대학병원
순서대로		③ 보통이다	(예) 3회 →003	(예) 3회 →03	(예) 20일→020	② 사고	② 병・의원(지역내/지역외)
기재하시오.		④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없음 →000	없음→00	없음→000	③ 출산	③ 한방 병・의원
		⑤ 건강이 아주 안 좋다				④ 건강검진	④ 보건소
						⑤ 요양/휴식	⑤ 기타
						⑥ 성·정형/교정	⑥ 치과병·의원
						① 기타	① 요양병원
1							
2							
3							
4							
5							
6							
7							
8							
9							

#### 〈 유의사항 >

#### 문 2-1) 외래진료횟수

- ※ 외래진료횟수는 법정의료기관의 횟수만 합산합니다. 순회 진료를 받은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 동일병원에서 각각 다른 진료과목을 2회 이상 진료한 경우는 1회로 표시하고, 2곳 이상의 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2회로 표시합니다. 건강검진은 외래진료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문 2-2) 입원횟수

※ 장기입원환자가 365일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1회로 기록합니다.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도 그 횟수를 포함합니다. 응급실에 당일 입·퇴원하는 경우, 교통사고나 재활치료 등의 이유로 여러 병원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는 모두 1회로 표시합니다.

#### 문 3) 병원에 입원한 이유

※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으면 '① 비해당'으로 표시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다면 2019년 1년 중 가장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경우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이유를 기입합니다. '⑤ 요양/휴식'은 질병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문4)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 노인복지관에 의사가 왕진을 오거나 노인복지관 내에 의사가 1인 이상 직원으로 상주할 경우 이곳에서 의료서비스를 주로 이용한다면 '⑤ 기타'로 표시합니다

가구원 번호	문5) 2019년 1년 중 건강검진 횟수	문6) 만성질환	문7) 2019년 12월 31일 기준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 2쪽의	2019년 1년 중 건강검진 횟수	① 비해당	(예) 3개 → 03
기구원 번호	(예) 1회 →1	① 3개월 미만 투병·투약하고 있다	없음 → 00
순서대로	없 <del>음→</del> 0	②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투병 투약 하고 있다	
기재하시오.		③ 6개월 이상 투병·투약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 〈유의사항〉

#### 문5) 건강검진 회수

※ 학교나 유치원에서 지정병원을 정하여 혈액, 소변, 엑스레이, 심전도 등 핵심 검진항목을 건강검진 받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5대 암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받는 경우도 건강검진 횟수로 포함합니다.

#### 문6) 만성질환

※ 투병 때문에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하나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기간은 최초 투병 및 투약시점부터 산정합니다.

#### 문7)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 ※ **민간의료보험 전용상품**(암보험, Cl(Critical Illness)보험, 어린이의료보험, 실손형 의료보험, 실버 및 간병보험, 상해보험, 일반질병보험, 특정질병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해당건수를 기록합니다. (예) ○○○ 의료, 질병, 암, 건강보험
- ※ <u>CI(Critical Illness)보험</u>: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이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보통 종신보험과 묶어서 판매되며, 질병 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정부문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 ※ <u>실손형 의료보험</u>: 질병이나 상해로 병·의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입원비, 진료비, 수술비 등)를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장하는 보험
- ※ 가족의료보험(주계약자가 가구주, 종계약자가 배우자,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에 가입한 경우 가입건수는 1건이 아니라 <u>가구원</u> 각각의 가입건수를 체크합니다.
- ※ 납입기간이 끝났으나 보장받고 있는 보험이 있으면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월평균 납입보험료는 0으로 간주합니다.
- ※ 상해보험의 경우 상해보험 전용상품은 제외하고, 상해와 질병보험이 혼합된 형태의 보험(생명보험회사에서 주로 판매하는 상해보험은 여기에 해당됨)은 포함시켜 건수를 계산합니다.

[주	요병명코드]						
1	암(위, 간, 폐, 기관지등)	10	폐결핵, 결핵	19	고지혈증	28	치아우식증(충치)
2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	1	만성기관지염(심한 가래, 기침)	20	치질(치핵)	29	만성치주 질환(풍치, 잇몸병)
3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	(12)	천식	21)	만성부비동염(축농증)	30	기타질병(급성질환 등)
4	만성간염, 간경변	(13)	백내장, 녹내장	22	기관지확장증	31)	희귀난치성 질환
(5)	당뇨병	(14)	만성중이염	23	알레르기성 비염	32	저혈압
6	갑상선 질환	(15)	만성신부전증(만성신장질환)	24	턱관절질환	00	없음
7	고혈압	16	골절, 탈골 및 사고로 인한 후유증	25	아토피성 피부염		
8	중풍, 뇌혈관 질환	17	골다공증	26	요실금		
9	심근경색증, 협심증	18	빈혈	27)	우울증		

## III. 경제활동상태

- **※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 당시 만14세 이하이었던 경우는 문1)의 '0'에 체크하고, 다음 [Ⅳ.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으로 넘어갑니다.
- **※ 당시 만15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이었던 모든 가구원은 응답해야 합니다.**

가 <del>구</del> 원 번호	이름	<b>문1) 근로능력정도</b> (※ 심신능력상)	문 <b>2)</b> 근로무능력사유	문3)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문3-1) 경제활동 참여 상태 (12월 31일 기준)
※ 2쪽의 기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가구원 이름	<ul> <li>⑩ 만4세 이하</li> <li>→ I . 사회보험 으로 갈 것</li> <li>① 근로가능 → 문3)으로 갈 것</li> <li>② 단순근로가능         (집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정도)</li> <li>→ 문3)으로 갈 것</li> <li>③ 단순근로미약자 (집안 일만 가능)</li> <li>→ 문3)으로 갈 것</li> <li>④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하지 않음 (집안일도 불가능)</li> <li>→ 문2)으로 갈 것</li> </ul>	① 중증장애 ② 질병 또는 부상 ③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 ④ 기타 ** 모든 응답지는 문3)에서 '⑨비경제활동인구' 로 응답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 → 문4)로 갈 것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 문3-1)로 갈 것 ④ 지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 문3-1)로 갈 것 ⑤ 고용주 ───────────────────────────────────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⑤ 고용주 ⑥ 자영업자 ⑦ 무급기족종사자 ⑧ 실업자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 ⑨ 비경제활동인구
1					
2					
3					
4					
5					
6					
7					
8					
9					

#### 〈 응어해설 〉

#### 문3)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1. 상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자(회사 내 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2. 임시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프로젝트 등)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자(단,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					
74 711	취업자	3.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자					
경제 활동		4. 자활 및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 또는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자					
인구		5. 고용주	한 사람 이상 피고용인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6.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7.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실업자	8. 실업자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4주 동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못한 자. 또한 구직활을 한 경우, 30일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취업대기자는 구직활동여부와 관계없이 실업자분류					
비경제	활동인구	9.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또한 주된 활동 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 장애, 기타로 구분되며, 집에서 통근하는 군 복무자(공익근무요원 등)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 ※ 상용/임시/일용 구분은 근속기간이 아닌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 학생, 주부라 하더라도 소득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는 취업자로 파악하며, 일시휴직자(병가, 산전후휴가, 육아휴 직 등)도 취업자로 파악한다.
- ※ 불규칙적인 일자리나 계절성이 강한 일자리(농업, 일용직, 자활 및 공공근로 등)의 경우는 조사업무 매뉴얼을 참조하여 응답하도록 한다.

#### 문3-1) 경제활동 참여 상태(12월 31일 기준)

※ 문3)에서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또는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로 응답한 경우 상황에 따라 12월 31일은 쉬고 있을 수 있음. 이런 경우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응답합니다.

가구원 번호	문4) 고용관계	문5) 근로시간형태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문 <b>7)</b> 근로지속가능성	문7-1) 근로지속불가능 사유
※ 2쪽의 기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① 직접고용 ② 간접고용 ③ 특수고용 ※ 아래 [문4) 고용관계] 참조	① 시간제 ② 전일제 *아래 [문5) 근로시간형태] 참조	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 아래 [문6] 근로계약기간설정여부] 참조	① 특별한 사유(본인의 중대한 과실, 폐업 등 사업체 자체의 소멸 또는 고용조정, 천재지변 등)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 문3)로 갈 것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 문7-1)로 갈 것	①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② 묵시적·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③ 사업주가 그만두라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 (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④ 현재 하는 업무(프로젝트)가 끝나기 때문에 ⑤ 현재의 일자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 하기 때문에 ⑥ 특정 계절 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 문4) 고용관계

- ① 직접고용: 고용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둘 사이에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로 일반적인 고용형태라 할 수 있다. 사용 종속관계가 긴밀하다.
- ② 간접고용: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사실상의 사용자가 다른 경우. 근로계약상 '본래 소속의 고용주-일하는 곳에 있는 사용자-근로자'간의 삼각관계가 성립한 다. 파견, 용역 근로가 이에 해당한다.
- 파견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 용역근로: 용역회사(용역을 받고자 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 회사의 직원을 보내 해당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이 회사의 지휘 하에 이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 ③ 특수고용: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에 있는 자로서,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을 얻고 노무제공의 방법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예: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지입형태의 레미콘 (화물, 덤프)기사, 택배원(퀵서비스 포함), 다단계판매원, 화장품외판원, 카드모집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으로 학원차량 기사를 하는 경우(단, 본인의 차량이 아닌, 학원에 속한 차량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는 직접고용에 포함) 등

#### 문5) 근로시간 형태

- ①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또한 임금이 시간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 ② 전일제: 시간제 근로자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 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근로계약상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일정한 사업(프로젝트)완료 기간에 한해 고용된 경우: 사업완료기간이 명백하면 계약기간 정해진 것으로 보고, 사업완료 기간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봄
- 일용직의 경우: 인력시장에서 하루하루 고용되어 일을 하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보고, 고용주(혹은 십장)의 지시에 따라 근로기간이 결정되어 본인은 언제까지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봄
- 문가) 근로지속가능성: 근로계약 기간의 설정여부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다.
  -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경우 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본인의 중대한 괴실, 폐업 등 사업체 자체의 소멸 또는 고용조정,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경우i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의 반복갱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로가 가능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의 사정상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한시적 근로자)i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계약쟁신이 불기능한 경우

가 <del>구</del> 원 번호	문8)	업종	문	문9) 직종					엄장 규모	문11) 비경제활동 사유
※ 2쪽의 기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코드에서 코드 27 하시오. ※ 자활 및 노인일/	> 산업분류 서 중분류 자리를 기입	※ 좌측 직업명은 주관식으로 기입, 우측 직업코드는 [조사업무 매뉴얼] 〈부록3〉 직업분류코드에서 소분류 코드 4자리를 기입하시오.					① 1~4명 ② 5~9명 ③ 10~29명 ④ 30~49명 ⑤ 50~69명 ⑥ 70~99명 ⑦ 100~299명 ⑧ 300~499명 ⑨ 500~999명 ⑩ 1000명 이상 ⑪ 잘 모르겠다		① 근로무능력 ② 군복무 ③ 정규교육기관 학업 ④ 진학준비 ⑤ 취업준비 ⑥ 가사 ⑦ 양육 ⑧ 간병 ⑨ 구직활동포기 ⑩ 근로의사 없음 ⑪ 기타
			직업명	직업코드						<ul><li>** 사유가 겹치는 경우에 주된 사유 하나만 응답</li><li>** 군복무 대기지도 '② 군복무로 응답</li></ul>
1										
2										
3										
4										
5										
6										
7										
8										
9										

#### 〈 유의사항 〉

#### 문8)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를 따른다(조사업무 매뉴얼 참조).

#### 문9) 직종

※ 한국표준직업분류(7차 개정)를 따른다(조사업무 매뉴얼 참조).

#### 문10) 사업장 규모

- ① 문3)에서 '①~③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 ④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로 응답한 경우
  - 종사업체의 상호로 파악되는 전체 사업장 차원의 종사자수를 말하며, 소유, 경영, 인사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종사자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OO은행의 OO지점일 경우 종사자수는 지점의 종사자수가 아니라 그 은행의 전체 종사자수다.
  - 만약, 지점이 아닌,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일 경우 소유와 운영이 모회사와 별도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장의 종사자수에 해당 하는 번호를 찾아 기입한다. 예를 들면, OO햄버거의 OO지역 체인점의 경우는 햄버거 업체 전체의 종사자가 아닌, OO지역 체인점의 종사자수만 기입한다.
  - 그룹사의 경우 해당 계열사 차원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면, OO그룹의 OO자동차에 다니는 경우는 자동차 계열사의 종 사자수를 기입한다.
  - 공무원, 공립학교 교사 등은 '⑩1000명 이상'으로 기입한다.
  - 하청업체의 경우는 원청업체가 아닌 자신이 소속된 하청업체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면, \*\*업체에서 근무를 하지만, OO 업체의 소속으로 급여도 OO업체에서 받을 경우는 OO업체의 종사자수를 적는다.
  - 또한, 파견근로 및 용역근로의 경우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의 사업장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어, A업체와 고용계약을 맺어 A업체(고용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등 인사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이 B업체(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A업체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의 경우에는 사업단 인원수가 되지만, 직업소개소 등과 같은 송출업체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경우(예를 들어 파출부 등)는 '1명'으로 간주한다. 즉, 남의 집에서 혼자 일하는 육체적 단순노무, 가사서비스 등과 같은 일용임금근로자는 자신만 종사자로 파악, '①1~4명'로 응답한다.
- ② 문3)에서 '⑤~⑦비임금근로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로 응답한 경우
  - 고용주: 고용주를 포함한 자기 사업체내의 전체 종사자수(무급가족종사자 포함)
  - 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종사자수

##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 **※ 아래의 모든 조사항목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가구원번호와 이름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2쪽의 순서 및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구원	시르	공적인	연금 가입	국민연금				
번호	이름	문1) 공적연금가입형태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문3) 가입종별	문 <b>4)</b> 국민연금납부여부	문5) 미납유형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	가구원 이름	● 비해당 →문9)로 갈 것 ① 연금수급 →문9)로 갈 것 ② 연금가입 →문2)로 갈 것 ③ 연금수급하면서 가입 →문2)로 갈 것 ④ 미가입 →문8)로 갈 것 ※ 공적연금에는 국민,공 무원,사학,군인,별정직 우체국직원연금이 포 함됨. 보훈연금은 제외 ※ 아래 [문1) 공적연금 가입형태] 참조	① 국민연금 →문3)으로 갈 것 ② 공무원연금 ③ 사학연금 ④ 군인연금 ⑤ 별정직우체국연금 ⑥ 모름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임의가입자(직장이 나 지역가입자는 아 나지만 미래 연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있음) ④ 임의계속가입자(60~65세인데 수급권을 얻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있음) ⑤ 모름 →문9)로 갈 것  ※ 실업상태로 납부에 외자의 경우는 ② 지역가입자로 응답.		① 납부예외자 →문6)으로 갈 것 ② 보험료 미납 →문7)로 갈 것 ※ 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가입자 이지만 실직, 사 업중단, 휴지(출산, 육아 등), 군입대, 학업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 지 않는 사람		
1								
2								
3								
4								
5								
6								
7								
8								
9								

#### 문1) 공적연금 가입형태

#### <질문시 유의사항>

공적연금 가입현황을 먼저 질문합니다. 즉, ①, ②, ③을 먼저 질문해서 해당되는 항목에 먼저 체크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먼저 아래 지침을 참조하여'⑥ 비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역시 아래 지침을 참조하여'⑥ 미가입'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파악하도록 합니다.

#### <응어해설>

- ① 연금수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의 수급자(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도 포함)
- ② 연금가입: 국민연금(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포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의 가입자

(만18세 미만으로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라 하더라도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시켜 준 경우는 연금가입)

- ③ 연금수급하면서 가입: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받으면서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됨.
- ④ 미가입: 공적연금 가입대상자인데, 어떤 공적연금제도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1959년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던 자인데 2019년 12월 31일 기준 수급 혹은 임의계속가입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가입자이었던 자가 만60세에 도달하였는데도 수급과 가입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미가입으로 응답하고, 문8)미가입 이유에 ⑥만60세 경과로 기입)

⑥ 비해당: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자(만18세 미만, 만60세 이상 등) 중 ①연금수급~④미가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지침서) 참조)

####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 ※ 과거 가입했던 제도가 아니라 현재 가입하고 있는 제도 기준임.
-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그 외 보험료 미납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포함됨.
- \* 업종, 직종 분류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등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등 해당 직역연금 가입자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예를 들어, 구청직원이라 하더라도 일용직, 용역직원 등은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이 아닐 수 있음.

가구원				국민연금		
/ 기 전 번호	이름	문6) 납부예외 사유	문6-1) 납부예외 기간	문7) 미납 이유	문7-1) 미납 기간	문8) 미가입 이유
* 2쪽의 기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	가구원 이름	① 실직, 휴직, 사업중단 ② 3개월 이상 입원 ③ 생활곤라 ④ 학업(재학) ⑤ 기타(자연재해, 교도소 수감 등)	2019년 1년간 납부예외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 간은 몇 개월입니까? - 문9)로 갈 것 ※ 2019년 1년간 기준임.	● 비해당(미납경험없음)  ①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 적 여유가 없어서 ②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③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걱정이 없을 것 같아서 ④ 모름 ⑤ 기타 ※ 2019년 1년 기준임. ※ 문식에서 '①납부하고 있음'으로 응답한 사람 중 20 19년 1년간 미납경험이 없는 경우 '⑩비해당'으로 기입하고, 미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①~⑤ 중 응답.	2019년 1년간 보험료를 몇 개월이나 미납하셨습니까? -문9)로 갈 것  ※ 2019년 1년간 기준임. ※ 2019년 1년간 미납경험이 없는 경우는 0으로 기입	①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②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③ 가입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④ 모름 ⑤ 기타 ⑥ 만60세 경과
1			개월		개월	
2			개월		개월	
3			개월		개월	
4			개월		개월	
5			개월		개월	
7			개월 개월		개월 개월	
8			개월		개월	
9			개월		개월	

71701	산재/고용보험		퇴직금/퇴	직연금	개인연금	건강보험
가구원 번호	문9) 산재보험 가입여부	문10) 고용보험 가입여부	문11) 퇴직금 적용여부	문12) 퇴직연금 가입여부	문13) 개인연금 가입여부	문 <b>14)</b> 건강보험 가입여부
※ 2쪽의 기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	① 비해당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공무원, 사립학교교 직원, 군인의 경우 '① 비해당'에 해당. 별정우체국직원의 경 우는 별도이므로 가 입여부를 응답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① 비해당'임.  ※ 다른 종사자 없이 혼자 사업하는 자영 업자는 '② 비해당'이 며, 고용주는 사업장 이 산재보험 가입 사 업장인지에 따라 '① 가입' 또는 '②미가 입'으로 분류함.	① 비해당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의 경우 '⑥ 비해당'에 해당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⑥ 비해당'임.  ※ 2012.1.22 이후자영자 및 고용주(50인 미만 근로자사용)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 모두가입 가능	① 비해당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 별정직우체국직원 포함) ① 받을 것이다 ② 받지 못할 것이다 ③ 모름 ※ 직장에서 퇴직금제 시행 여부가 아니라, 응답자 본 인이 현재의 직장에서 퇴 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문함. ※ 퇴직금중간정산 등으로 앞으로 받을 퇴직금이 적 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①'로 응답 ※ 회사가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된직금 사 외적립해서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퇴직보험의 보 협금을 받을 수 있는 경 우도 '①'로 응답	◎ 비해당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별정직우체국직원 포함)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법정퇴직금에 상응하 는 금액을 사용자가 단독으로 혹은 근로자 와 공동으로 조성하 고, 금융기관에 위탁 ・운용하여 근로자 퇴 직시 연금 또는 일시 금으로 지급하는 새로 운 공적연금제도임. ※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	① 개인연금만 가입 ② 종신보험만 가입 ③ 개인연금, 종신보험한 가입 ④ 미가입(수령 중인 경우 포함) ⑤ 모름 ※ 개인연금은 은행, 보험회사, 투신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강제적용되는 사회보험이 아니라일종의 사적인 저축수단임. ※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서 개인연금의 하나로 파악할수 있음.	<ul><li>① 직장가입자</li><li>②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li><li>③ 지역가입자</li><li>④ 지역가입자의 세대원</li><li>⑤ 의료급여 1종</li><li>⑥ 의료급여 2종</li><li>⑦ 국가유공자 무료진료</li><li>⑧ 미가입</li></ul>
1						
2						
3						
4						
5						
6						
7						
8						
9						

	V. 의료 B
<ul><li>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19년 12월 31일을 기가 기가</li></ul>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까?
① 그렇다 → 문1-1)로 갈 式	
〈 <b>유의사항</b> 〉 · 한 가구 내에서 1인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 이 경우 '① 그렇다'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되고,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에도 건강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
문1-1) <b>(문1)의 ①번 응답자만)</b> 건강보험	에 가입되어 있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의 소득비례 부	사에 존재할 경우, <b>가구주 가입을 기준</b> 으로 합니다. 과 및 원천징수가 가능한 <u>임금소득자(직장가입자: 1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u> 험료의 원천징수가 곤란한 <u>비임금소득자(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u>
	응답 후 문 2)로 가십시오.
문 1-2) (문1)의 ②번 응답자만) 건강보험 ① 의료급여(1종) ② 의료급여(2종) ③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④ 미가입	d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문1-3)으로 갈 것  → 문4)로 갈 것
〈 <b>유의사항</b> 〉 ※ 한 가구 내에서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무료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무료진료를 <u>동</u> 시에 발	전료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u>가구주 가입을 기준</u> 으로 합니다. 단, 가구주가 받는 경우에는 주로 이용하는 급여를 기록해 주십시오. 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기본적인 의료혜택(진찰, 수술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으로 구분됩니다.
지 등 기용 - 입원: 무료 - 의레: 500-2,000원/ 특수 장비 총	2층 - 입원: 급여비용의 10%, - 외래: 500원-1,000원/ 특수 장비 총액의 15%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등 길렉질환자, 희귀난치성질한 등 중증회성환자 만 해당) 등록자, / - 헬려한자, 타밥작용자(이제만, 의 입망이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자, 복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등력기구, 선정특례 등록한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이닌 가구 기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주요무형문화재의 보유
<ul> <li>※ 국가유공자 무료진료란, 의료급여(1종, 2종)와</li> <li>(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를 말합니</li> <li>※ 차상위 수급권자(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li> </ul>	가는 달리 의료비를 국가보훈처로부터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국비진료대상자 다(배우자와 유족은 보훈병원 진료비 60% 감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③ 차별대우를 받음         이 많은 것)       ④ 기타(적을 것 :)

충답 우 문4)도 가십시오.

문 2)	귀댁O	서는 2019년 1년 중 건강보험료를 <b>미납</b>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_
	① 있	다 → <mark>문2-1)로 갈 것</mark> ② 없다 → <mark>문4)로 갈 것</mark>	_
	문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_
		① 건강보험을 별로 이용할 일이 없어서 ②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 ⑤ 납기기한을 잊어버려서 ⑤ 기타(적을 것 :)	
	문 2-2)	(문2)의 ①번 응답자만) <u>2019년 1년 중</u>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ç	<b>간</b> 개월	
	(문1)	(기번 응답자만) 귀댁에서 건강보험을 이용하며 경험했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별한 문제점이 없다       ② 보험의 적용범위가 좁음         보험료 부담       ③ 기타(적을 것 :	
문 4)		건강 및 의료" 문 8)의 가구원별 민간 의료보험 가입건수를 고려할 때) <u>2019년 12월 기준</u> 으로 가입하고 계신 모든 민간의료보험의 <u>12월 보험료</u> 는 총 얼마나 됩니까?	
	17	월 보험료 합계 <sub>백 십 일</sub> 만원	

## VI. 주거

문 1)	귀댁	은 <b>2019년 1월 1</b> 일	<u>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에</u> 이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	렇다 → <b>문1-1)</b>	로 <b>갈 것</b> ② 아니다 → <mark>문6)로 갈 것</mark>	
듄	₽ 1-1)	2019년 1월 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에 이사하신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ol> <li>주택마련</li> <li>재정문제</li> </ol>	(3) 내/외부요인 (5) 거주환경 ④ 주택규모 및 시설설비 (6) 기타( )	
	ĺ	〈 유의사항 〉		
		① 주택마련	- 결혼으로 인해 주택을 마련하려고 - 세대 독립을 위해 분가하려고 - 내 집(자가주택)마련을 위해 - 이미 분양받은 주택으로 이사하려고(신축 및 소유주택 포함)	
		② 재정문제	- 집값 혹은 집세가 너무 비싸고 부담스러워서	_
		③ 내/외부요인	-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 계약 만기로 인해서 - 재개발로 인해서	
		④ 주택규모 및 시설설비	-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 - 주택규모를 더 늘리려고(주택규모 확장) - 주택규모를 더 줄이려고(주택규모 축소)	
		⑤ 거주환경	- 부모, 자녀 등과 가까이 살려고 - 직주근접을 위해서 혹은 직장변동(취직·전근 등) 때문에(개인사업 등으로 인한 이사 포함) -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좋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 자녀 양육 및 교육환경 때문에 - 편의시설/위락시설이 부족해서 - 쾌적하고 양호한 지역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⑥ 기타	- 기타	_
	ŧ.			
문 2)	2019	년 <b>12월 31</b> 일 기준	S으로 귀댁이 거주한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② 디 ③ 디	반단독주택 가구용 단독주택 세대주택 립주택(빌라)	<ul> <li>⑦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li> <li>⑧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등)</li> <li>⑨ 오피스텔</li> <li>⑩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li> </ul>	
	⑤ 일	반아파트 구임대아파트	① 임시가건물(컨테이너, 재개발지역 가이주단지 포함) ② 기타(적을 것 :) ③ 국민임대아파트	
	〈 유의/ ※ 반드		점유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3)	2019	년 <b>12월 31</b> 일 기준	S으로 귀댁의 주거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① 지 ② 반	하층 ·지하층	③ 지상 ④ 옥탑	
	〈 <b>유의/</b> ※ 한 기		할 경우, 가장 좋은 위치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i.				

李	개		

〈 유의사항 〉

※ 사용하는 방의 수를 파악할 때 세를 준 경우는 포함하지 않도록 합니다.

문 4)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방은 **모두** 몇 개였습니까?(세준 경우 제외)

- ※ 거실의 경우, 침실로 사용하고 있거나 침실로 사용이 가능하면 방수에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문 5)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건평(APT 등의 경우 분양면적)은 얼마입니까?(1평≒3.3㎡)

	m²

〈 유의사항 〉

- ※ 마당, 정원, 창고 등을 제외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평수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세준 경우 그 면적을 제외하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 문 6)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거주하였던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는?

 ④ 월세(사글세)	

- ① 자가 ② 전세 → 문7)로 갈 것
- ⑤ 비가구워 명의 주택
- ⑥ 기타



〈 유의사항 〉

③ 보증부월세

- ※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합니다.
- ※ 가령, 할머니(가구주)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아들(가구원이 아님) 명의로 해놓고 살고 있는 경우, 조사 대상인 할머니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는 '⑤ 비가구원 명의 주택'에 해당됩니다. ※ 점유형태 '⑥ 기타'에는 무상 관사, 사택 등이 포합됩니다.
- 문 7)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하였던 집의 가격(현시가기준)은 얼마나 됩니까?



#### 〈 유의사항 〉

- ※ 자가의 경우 주택가격, 전세의 경우 전세금, 보증부월세의 보증금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집의 가격은 반드시 명의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가령, 집이 (가구원이 아닌) 자녀의 명의로 된 경우 집의 가격에 대한 응답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1순위	2순위

문 9)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살았던 귀댁의 주택관련 부채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 분							
2	<b>2019년 1년간</b> 주택관련 부채를 얼마나 갚으셨습니까? (※ <b>원금</b> 만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u> </u>	2019년 12월 31일 기준 주택관련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 단, 이자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갚지 못한 이자만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십억	<u></u> 전 일	천	백	십	일	만원

/	$\sim$	1.1	TTL	١
	Q٥	I A I	IWI	

※ **주택관련 부채 :** 주택구입비, 보증금, 증개축비용만 포함하고,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은 제외합니다. ※ 없음= '0' 으로 표시합니다.

문 9-1)	<b>2019년 1년간</b> 대출상환액(이자포함)의	연체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ol> <li>연체한 적이 없다</li> <li>1회</li> </ol>	③ 2~3회 ④ <b>4</b> 회 이상	
/ 0011			

※ 주택관련 부채가 없거나 2019년 이전에 주택관련 부채를 다 갚은 경우 '① 연체한 적이 없다'에 표기해 주십시오.

문 10)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이 어떠하였습니까? 다음 항목별로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예	아니오
7	영구건물로서 튼튼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갖추고 있다.	1	2
Û)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다.	1	2
다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하여 생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1	2
라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	1	2
(II)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다.	1	2

문 11)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의 주거시설 종류와 사용형태를 응답해 주십시오.

시설종류	사용형태	
⑦ 상·하수도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u></u> 부엌	① 단독사용-입식 ② 단독사용-재래식 ③ 공동사용-입식 ④ 공동사용-재래식 ⑤ 없음	
ⓒ 화장실	① 단독사용-수세식② 단독사용-재래식 ③ 공동사용-수세식④ 공동사용-재래식 ⑤ 없음	
ඓ 목욕시설	①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 ③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② 단독사용-온수시설 없음 ④ 공동사용-온수시설 없음 ⑤ 없음	
⑩ 난방시설	① 연탄 또는 재래식(땔감) 아궁이 ④ 기름보일러 ⑦ 중앙난방(지역난방) ② 연탄보일러 ⑤ 가스보일러 ⑧ 전기장판 ③ 나무·석탄보일러 ⑥ 전기보일러 ⑨ 기타(적을 것:	)

## 문 12) 2019년 1년간 귀댁에서 이용한 적이 있는 주거복지 관련 사업이 있다면 그 서비스에 체크해 주십시오.

주거복지 관련 사업	경험이 있다	주거복지 관련 사업	경험이 있다
② 영구임대주택		☞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근로자・서민)	
④ 공공(국민)임대주택		◉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적을 것:)	
⑤ 전세자금(융자)지원(저소득·근로자·서민) (※지자체의 전세(융자)지원 포함)		④ 기타(적을 것:)	
③ 저소득층 월세지원 (※ 지자체의 월세지원 포함)			

#### 〈 유의사항 〕

-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다음 한목으로 넘어가면 된니다
- ※ '④ 기타'에는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지원, 고령자 임대주택,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직장 여성 아파트), 행복주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砂,⑭,⑭,砂의 경우 2019년 이전부터 입주하여 2019년 동안에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이용경험 여부에 '① 있다'로 응답합니다. 그러나 ④,❶,⑪의 경우는 2019년 당해 언도에 지원받은 경우만을 이용경험 어부에 '① 있다'로 응답합니다.

## VII. 생활비

#### 〈 유의사항 〉

- ※ 생활비: 기정생활을 위한 비용만 기입합니다, 따라서 **사업용도의 비용은 제외합니다.**
- ※ <u>친인척, 이웃,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조받는 각종 현물(장학금, 의료비, 각종 공과금</u> 대납, 식료품, 의류, 난방용품, 복지 <u>할인 등)도 현금으로</u> **환산**하여 해당 비목의 생활비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 ※ 할부 구매의 경우 구입시점기준(2018년 구입)이며, 그 품목의 가격÷12를 기입합니다. 예) 2019년 10월에 1,200만원짜리 자동차를 24개월 할부(월 50 만원)로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의 총가격을 12개월로 나눈 금액(100만원)을 기입합니다. 따라서 2018년 중 24개월 할부로 차를 구입하여 2019년 에도 월 50만원씩 할부금을 내는 경우라도 2019년의 지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 ※ 9개월 미만 생계를 같이한 가족이 있을 경우 이들의 지출은 총생활비에서 제외합니다. 그 이유는 가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u> </u>	<u> </u>	<u>안 가옥이</u> 있을 경우 이율의 시술은 <u>종생활비에서 세외압니다.</u> 그 이유은 가구원이 0	[니기 때]	느ㅂ니니			
		문 1-1) 가정식비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월평균 가정식비는? ※ 기정에서 먹는 주식, 부식, 간식비용, 제사비용 (음주비용 제외) ※ 자가소비(자기가 농사를 지어 먹는 것, 자기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 등) 포함	월평균	천	백	십	<b>만원</b> 일
문 1)	식료품 비	문 1-2) 외 식 비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월평균 외식비는? ※ 직장인의 중식비(무료 중식비 포함), 가족 및 가구원 외식비, 학교 급식비, 밖 에서 먹는 술(음주) 비용, 복지관에서의 무료식사 등.	월평균	천	백		<b>만원</b>
		문 1-3) 주류·담배	<b>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월평균</b> 주류.담배비는?	월평균	천	백	십	<b>만원</b> 일
문 2)	주 거 비 (주택 구입비	문 2-1) 월 세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월평균 월세(사글세 포함)는? ※ 돈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어도 '계약한 월세액'을 기입 ※ 전세, 자기인 경우 '0' (단, 자가이나 지대를 내는 경우 월평균 지대액을 기입) ※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제외하고 월세만 기입	월평균	천	백	십	<b>만원</b>
	세외)	문 2-2) 주거관리비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월평균 주거 관리비 및 수선비는? ※ 주택설비 및 수선비, 아파트 등 관리비, 이사비, 복비, 정화조비 등	월평균	처	백	۵.	<b>만원</b>
문 3)	광 열	· - - - - - - - - - - - - - - - - - - -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월평균 광열수도비는? ※ 수도비, 전기료, 난방비(연탄, 등유, 경유, 도시가스, LPG 등 급탕비, 에너지 바 우처 포함))	월평균	천	백	십	<b>만원</b>
		_	└ 난방비(연탄, 등유, 경유, 도시가스, LPG 등 급당비, 에너지 바우처 포함)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b>만원</b> 일
문 4)	기구 · 가사용 품 비	문 <b>4-1</b> ) 가구집기 • 가사용 품비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월평균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 가구, 기정용기기(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등), 식기주방용품, 가시잡화 및 소모품(조명기기, 화장지, 전구, 공구, 세탁청소용구 등), 침구 및 실내장식품, 가사서비스 비용(파출부, 청소비 등), 기저귀 값, 정수기 대여료, 치료목적이 아닌바우처(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이용료 등	월평균	천	백	십	<b>만원</b> 일
		문 <b>4-2</b> ) 보육료비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월평균 보육료는? ※ 보육료는 베이비시터, 놀이방을 포함하는 것이며, 유치원은 제외함.	월평균	천	백	십	<b>만원</b> 일
문 5)	의류	신발비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월평균 의류·신발비는? ※ 외의(스포츠웨어 포함), 내의, 학생복(교복), 구두, 운동화, 모자(스포츠용 포함) 등 구입비 및 수선비, 세탁료 등	월평균	천	백	십	<b>만원</b>
문 6)	보건	의료비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월평균 보건의료비는? ※ 입원비, 외래진료비, 치과진료비, 수술비(임플란트, 성형수술 등도 포함), 약값, 간병비, 산후조리비, 건강진단비, 건강보조식품, 보건의료용품비(안경,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치료용바우처(비만아동바우처)이용료 등. 보건의료비는 본인이부당하는 금액만 기입	월평균	천	백	십	<b>만원</b>
문 7)	교육	문 7-1) 교 육 비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월평균 공교육비는? ※ 등록금(초・중・고・대학・대학원), 납입금, 입학금, 교재비, 문방구비, 보충수 업비(모든 학생이 다 하는 경우), 유학비, 아외학습비, 수학여행비 등	월평균	천	백	십	<b>만원</b>
(	비	문 7-2) 교 육 비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월평균 사교육비는? ※ 학원비, <u>유치원비</u> , 도서관 및 독서실 비용, 과외수업비, 검정고시비, 학생의 어 학연수비, 학습바우처 등	월평균	천	백	십	<b>만원</b>
문 8)	교양	오락비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월평균 교양·오락비는?  ※ 신문, 서적, 잡지, 영화 및 공연관람, 교양오락용품 구입비(TV, 오디오, PC, 유선방송, 피아노, 장난감, 등산용품, 낚싯대, 골프채 등), 교양오락서비스(PC방, 노래방, 운동강습료, 일반인의 어학학습비, 단체관광비 등), 비디오(DVD) 대여료, 애견(강이지) 구입비, 화분 구입비, TV수신료, 이동용자전거 등	월평균	천	백	십	<b>만원</b> 일

문 9)	교통 통신비	문 9-1)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월평균 교통비는? ※ 택시·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비, 자동차 구입 및 유지비, <u>자동차 토료</u> 대리운전비, 성인용자전거 등	월평균	천	백	십	<u></u>	만원	
	0 1 1	문 9-2)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월평균 통신비는? ※ 전화·휴대폰 구입 및 이용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	월평균	처	백	십	일	만원	
			<b>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월평균</b> 기타소비지출은?							
			※ 이미용용품 구입 및 서비스(화장품, 비누, 삼푸, 이・미용실, 목욕료등), 장신구(핸드백, 시계, 귀금속 등), 경조비, 교제비용, 친목회비, 종교련(십일조 등) 비용, 보장성보험료(저축성보험 제외), 관혼상비, 용돈 등	고관 등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10)	기타소	비지출	└ 경조비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밴	십	일	만원
			L 종교관련비용(십일조 등)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u></u> 천	백	십	일	만원
			L 비영리단체(기부금, 직장노조비, 친목회비 등) 이전지출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처	백	십		만원
		문 11-1) 비 동 거 가 구 원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따로 시는 가구원(타지에서 공부하는 생,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배우자 등)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금. ※ 현물 포함 ※ 지취비용, 생활잡비, 용돈 등(단, 등록금 등 교육비는 7.교육비에 기입)	는 학 은?	월평균	신	백	십		만원
문 11)	사 적 이 전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가구원이 아닌 부모, 자녀, 친지 등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금은?	부모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	문 11-2) 기 타		자녀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본인 명의가 아닌 부채에 대하 이자(예컨대 이들 명의의 집에 대하	기타	월평균	처	밴	십		만원
			<b>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월평균</b> 세금은?			신	- 4	ㅂ	2	
			<ul> <li>※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갑근세, 재산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분담금, 민세, 취등록세 등의 연간 총납세액을 12로 나눈 값(단, 법인세 등 시 용도의 세금은 제외함)</li> <li>※ 본인 명의가 아닌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도 포함</li> </ul>	주 (업	월평균	천	백	십	<u> </u>	만원
			L 소득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u></u> 천	백	십		만원
문 12)	세	금	L 재산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u></u> 천	백	십		만원
			L 자동차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u></u> 천	백	십		만원
			L 종합소득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u></u> 천	백	십		만원
			L 부동산세는 얼마 입니까?		월평균	처	밴	십		만원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월평균 사회보장부담금은?  ※ 기족 모두의 국민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월 합산액 ※ 본인부담의 보험료만 포함(사업장이나 제3자가 부담해주는 보험료는 제외) ※ 사보험료(암보험, 보장성보험 등) 제외					십		만원
문 13)	사회보징	부담금 	L국민연금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sup>L</sup> 건강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u></u> 천	백	십		만원
			L고용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14)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지출하신 총 생활비는?   *** ********************************			- 당환, 	월평균	천	백	십	<sub>이</sub>	만원

<sup>※</sup> 없음은 반드시 '0' 표시. 지출 소득의 경우 이하 동일

<sup>※</sup> 천원 단위 이하는 소수점으로 표시(예. 5천원 → 0.5). 단 1만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단위로 처리. 예) 11만5천원의 경우 12만원으로 기입

## VIII. 소득

문 1) 가구원의 경제활동: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귀 가구 가구원 중 만 15세 이상(2004.12.31.이전 출생자)이었던 모 든 가구원의 경제 활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⑥의 활동 분류 중 해당하는 경우 1로 표시)

성명	가구원 . 번호	1)	상용근로	<b>르</b> 자	②임시	. 일용	근로자	③고 (농림	용주·자  축어업	·영자 제외)	4	농림축 경영주	산업	5 0	H업 경	영주	⑥무급 사 ·기티	또는 육	사자· 가 아· 학생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해당	개월수
	1																		
	2																		
	3																		
	4																		
	5																		
	6																		
	7																		
	8																		
	9																		
합계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문항 2로 가시오		문항 3으로 가시오		문항	문항 4로 가시오		문항 5로 가시오		문항 6으로 가시오		가시오	문항7로 가시오						

#### 〈 유의사항 〉

- ※ 15세 미만의 경우 이름만 기입.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에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 <u>한 시점에 직업이 둘 이상인 경우</u> 해당여부에 모두 '1'로 표시(예, 공무원이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 상용근로자와 농림축산업 경영주에 모두 '1'로 표시하고 문항 2와 문항 5에서 소득파악).
- ※ <u>개월수는 2019년 동안 일한(해당)</u> 개월수 기입(예, 전년(2018)부터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9년 3월에 퇴직하여 3개월 동안 쉰 후 7월 에 상용근로자로 취업하여 2개월 일한 경우 '상용근로자 일한 개월수'는 5개월임. 농업의 경우 12개월로 기입.)
- ※ 자영업, 농림축산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가구 중 2명 이상의 가구원이 하나의 사업장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그 중 1명만 고용주・자영자, 농림축산업 경영주, 어업 경영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⑥무급가족종사자로 표시함.

#### ※ 주된활동구분

- ① 상 용 근 로 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등. 일반직장인, 공무원, 법인경영자(월급 사장)등을 포함함.
- ②임시·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란 임금근로자중 상용이 아닌 사람으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예컨대,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 등을 말함.

일용근로자란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면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일한 댓가를 받는 사람 등을 말함.

- ③고용주·자영자 : (농림축어업제외) 1명 이상의 유급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고용주와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과 함께 일을 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경우.
- ④ 농 림 축 산 업 10a(약 300평) 이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거나,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액이 <u>120만원 이상</u>인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단, 판 경 영 주 : 매금액이 120만원 미만이라도 2018. 12. 31. 시점에 12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
- ⑤ 어 업 경 영 주 : 어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1개월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해면에서 수산 동식물의 포획·채취나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람.
- ⑥ 무급 가족 종사자: 일정한 보수 없이 자기 가족(동일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장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 가사 또는 육아: 자기의 시간 대부분을 자기집에서 가사업무를 하거나 가구원의 간병을 수행한 경우 또는 미취학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집에 있는 경우임.
  - 학 생: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로 재수생도 포함함. (※ 직장인이 야간대학(원) 등에 다니는 경우 주된 활동은 해당 근로활동(위의 ①~⑤)으로 표시함)
  - 기 타: 실업자, 장애, 부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심신무능력을 사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사가 없는 자 등

문 2)

상용근로자: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상용근로자였던 가구워 각각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연간 급여 총액(원천징수전 총급여) 은 얼마였습니까?

※ 총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 가구원 된 수당, 성과급, 소득공제 환급분, 판공비, 복지카드, 회사에서 성명 여가 총급여액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휴대폰 요금, 무료중식 등을 모두 포함한 번호 금액임. 연간 만원 1 일억 십억 십 ※ 총급여는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연간 2 만원 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여가 3 만원 십억 익언 천 밴 십 ※ 법인 경영자의 경우 상용근로자로 분류함. 연간 만원 4 십억 일억 백 십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연간 만원 5 십억 일억 배 십 여가 만원 6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1번과 3번이 상용근로인 경우 가구원 십억 일억 백 십 처 번호 1번과 3번에 이름을 기입하고 총급여액을 파악 기입한 후 7 연간 만원 십억 일억 천 백 십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이하 동일함). 만원 8 연간 십억 일억 천 밴 십

임시 • 일용근로자 문 3)

[보조기입란 3-a]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월평균 일한 횟수(출근일수)와 1회(1일)당 지급되는 보수는 얼마입니까?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일한횟수		1회당(	일당)	보수	
※ 월별로 일한 횟(일)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월별로 일한 횟(일)		1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수를 확인한 뒤, 2019년 1년 동안 전체 일한 횟(일)수를 12개 월로 나눈 것을 월평균 일한 횟(일)수로 기재함.		2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예) 2019년 가구원 A가 1~6월까지는 월 5회, 7~12월까지는		3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월 15회 일하였다면, 월 10회((30+90회)/12개월) 기재		4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 순서는 <u>반드시</u>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5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이 임시·일용인 경우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에 이름, 일한 횟수, 1회당 보수를 파		6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		7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소득 포함		8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 , , , , , , , , , , , , , , , , , ,		9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서며

3-1.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임시·일용근로자였던 가구원 각 각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연간 총급여(원천징수전 총급여)는 얼마 였습니까?

→ 상용근로 외 다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 ※ 총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 급된 수당, 성과급, 소득공제 환급분, 판공비, 복지카드, 회사에 서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휴대폰 요금, 무료중식 등을 모두 포 함한 금액임.
- ※ 총급여는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 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
-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이 임시·일용인 경우 가 구원 번호 2번과 3번에 이름과 총급여액을 파악 기입한 후 나 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
- → 임시·일용 외 다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0.0	번호			Ĺ	ייני כ	584	—i		
	1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2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3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4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5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6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7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8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일억

시언

백

여가 총급여앤

연간

신언

익언

처

배

9

가구원

9

연간

만원

만원

## 문 4) 고용주 및 자영자

[보조기입란 4-a]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고용주 혹은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1년 동안 연간 총매출액은 얼마였습니까?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총매출액 (A)
		1	<b>연간</b> 입역 원 백 십 일 만원
※ 가족구성원 중 2명 이상이 동일 매장 및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대표자 1 명만 고용주 및 자영자로 분류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서는 월급을 받		2	<b>연간</b> 입역 전 백 입 일 만원
으면 근로자로, 월급을 받지 않으면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함.		3	<b>연간</b> 입역 전 백 십 일 만원
※ 일한 개월 수, 월간 매출액 등을 바탕으로 파악		4	<b>연간</b> 입역 원역 천 백 십 일 만원
※ 순서는 <u>반드시</u>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5	<b>연간</b> 입역 원 백 십 일 만원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 번에 이름과 총 매출액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		6	<b>연간</b> 실역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7	<b>연간</b> 실역 전 백 십 일 만원
		8	<b>연간</b>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9	<b>연간</b> 실역 천 백 십 일 만원
[보조기입란 4-b]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고용주 혹은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매장 및 사업장 등을 운영하면서 소요된 연간 총비용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총비용 (B)
은 얼마였습니까?		1	<b>연간</b> 입역 원의 천 백 십 일 만원
※ 경비에는 재료비, 직원 인건비 및 직원 사회보험료, 법인세, 복리후생비, 공		2	<b>연간</b> 입의 전 백 입 일 만원
장 또는 가게 월임대료, 차량유지비, 광고비, 소모품비용 등이 포함됨.		3	<b>연간</b> 입역 전 백 십 일 만원
※ 순서는 <u>반드시</u>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4	<b>연간</b> 입역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 번에 이름과 총 비용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		5	<b>연간</b> 입역 원의 천 백 십 일 만원
		6	<b>연간</b> 입의 전 백 집 일 만원
		7	<b>연간</b> 입역 전 백 집 일 만원
		8	<b>연간</b> 입역 전 백 집 일 만원
		9	<b>연간</b> 입역 천 백 십 일 만원
4-1.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고용주 및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 의 1년 동안 연간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순소득 (A-B)
※ 순소득은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간 총비용을 감하여 구함.		1	연간 <sub>십억 일억 천 백 십 일</sub> 만원
※ 순소득은 소득세, <b>본인과 가족에 대한</b>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부담금을 <b>공제하기 전 금액임</b> .		2	연간 <sub>십억 일억 천 백 십 일</sub> 만원
※ 순소득에는 자가소비, 고용주와 사업주가 용돈 및 개인경비로 쓰는 비용 도 포함됨.		3	연간 <sub>십억 일억 천 백 십 일</sub> 만원
※ 순소득이 마이너스일 경우, 숫자 앞 칸에 <u>"一"표(마이너스 표시)</u> 를 하고 금액을 기입함.		4	여가 마워
<ul> <li>※ 순서는 <u>반드시</u>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li> <li>※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li> </ul>		5	면간 실역 실역 천 백 십 일 연간 만원
번에 이름과 순소득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		6	면간 실역 실역 천 백 십 일 <sup></sup> 만원
→ 고용주 및 자영자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십억 일억 전 백 십 일
		7	연간 <sub>십억 일억</sub> 천 백 십 일 <b>만원</b>
		8	<u>연간</u> 실역 천 백 십 일 <b>만원</b>
		9	연간 <sub>십억 일억 천 백 십 일</sub> 만원

4-2.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고용주 및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1년 동안 연간 전입소득은 얼마였습니까?	성명	가구원 번호			연긴	ŀ 전(	입소득	Ę	
※ 전입소득은 총수입중에서 가구로 가지고 오는 금액이다. 2019년 2,000만원을 벌어 1,300만원을 재투자하고, 집으로 700만원을 가지고 왔다면 700만		1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u>원 기입</u> ※ 그러므로 전입소득은 4-1의 순소득과 다를 수 있다. 전입소득은 음수(-)가		2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sub>일</sub> 만원
없음.		3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sub>일</sub> 만원
※ 순소득이 음수(-)인 경우도 전입소득은 있을 수 있음(즉, 0이 아닐 수 있음).		4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sub>일</sub> 만원
<ul><li>※ 순서는 <u>반드시</u>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li><li>※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li></ul>		5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sub>일</sub> 만원
번에 이름과 순소득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		6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sub>일</sub> 만원
→ 고용주 및 자영자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7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sub>일</sub> 만원
		8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b>만원</b>
		9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sub>일</sub> <b>만원</b>

문 5)	농림축산업 경영주											
5-1.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 가구가 경작하고 있는(소득이 발생하는) 경지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소작	는 것은 포함하고, 소작을 준 것은 제외함.)					(-	참고) 1	평≒3.3 <b>m²</b>				
	① 두	총						m <sup>2</sup>				
	② <b>밭</b>	총						m²				
	③ 임야(산)(유실수, 산나물 채취 등)	총						m²				
※ 없음 0	④ 기타(특용농작물, 비닐하우스 등 )	총						m²				

## [보조기입란 5-a]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농림·축산물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

- ※ 가구원 1인 이상이 농림축산업경영주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을 기입함.
- ※ 보조기입란 순서대로 기입한 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을 계산함.
- ※ 판매량 = 판매량(재고의 판매량 포함) + 다음 농사를 위한 종자량 + 임차료(소작료) 및 임금으로 지불한 수확량
- ※ 이전소비액은 농축산물을 가구원이 아닌 자녀, 형제, 부모, 친지 등에게 보낸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임.
- ※ 판매수입 = 판매량 × 판매단가 ÷ 10, 자가소비액 = 자가소비량 × 판매단가 ÷ 10, 이전소비액 = 이전소비량 × 판매단가 ÷ 10 (단위에 주의할 것)
- ※ 축산업에서 총 수확량은 가축의 총보유량임.

/A _	,신합에서 중 구확당는 가족의 중조규당함. 									
구분	예 시	종류	총 수확량 (a+b+c)	판매량 (종자, 소작료 포함) (a)	자가 소비량 (b)	이전 소비량 (c)	판매단가 (천원) (p)	(만원)	자가 소비액 <b>(만원)</b> ( <b>B=</b> b*p÷10)	이전 소비액 (만원) (C=c*p÷10)
	미곡: 메벼, 멥쌀, 찰벼, 찹쌀 곡류: 미곡을 제외한 맥류, 잡곡, 콩류, 감자 고구마 등 서류 등									
	채소 : 봄동, 미나리, 냉이, 달래, 오이, 쪽파, 파, 당근, 양파, 호박, 배추, 양배추, 상추, 시금치, 양송이, 아욱, 등 과일 : 사과, 딸기, 토마토, 앵두 등									
채소 과일 류	채소 : 샐러리, 양파, 부추, 감자, 풋고추, 마늘, 무, 여 오이, 가지, 호박, 배추, 양배추, 생강, 깻잎, 열무, 록 옥수수, 피망 등 과일 : 토마토, 참외, 수박, 포도, 복숭아, 자두 등									
	가 채소 : 고구마, 붉은고추, 당근, 양파, 파, 무, 콩, 배추, 시금치, 호박 등 과일: 배, 사과, 감, 대추, 유자, 키위, 은행 등									
	겨 채소: 우엉, 연근, 아욱, 양파, 봄동, 시금치 등 울 과일: 사과, 귤 등									
	특용작물 : 참깨, 들깨, 섬유작물, 인삼, 담배, 버섯, 기타약용작물 등 기타농작물 : 화훼, 뽕잎, 과수묘, 뽕묘, 묘목 등 임산물 : 밤, 잣, 호도, 도토리, 자연산 버섯이나 나물, 장작 등									
	총 계									
축산업	소, 젓소, 우유, 돼지, 닭, 달걀, 개, 젖산양, 염소, 사슴, 토끼, 오리, 꿀벌 , 기타 가축(면양 등)									
	총계									
				-	-	•	-			

5-2.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수확한 농림축산물의 연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은 얼마였습니까?										
농림축산물 판매수입 (A)	자가소비액 (B)	이전소비액 (C)	합 계 (A + B + C)							
면 간 총 십억 일억 천 벡 십 일	면 간 용 실역 일억 천 백 십 일	면 간 총 실억 일억 천 백 십 일	면 간 총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sup>※</sup> 재고판매량은 판매수입에 포함하여 계산

※ 없음 0

<sup>※</sup> 보조기입란 5-a의 합계를 기입. 농지를 임대해 준 경우 문항 8의 재산소득에 기입

5-3.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농업관련 기타잡수입은 연간 총 얼마였습니까?	연간 잡수입 총액(D)						
※ 농업잡수입에는 농업소득피해보상금, 폐농자재, 볏짚단 판매대금 등이 포함됨. (※ 없음 0)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보조기입란 5-b].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농·임산물 생산, 가축사육에 소요된 지출(농업경영비) 의 세부항목									
※ 농림축산업경영주인 가구원이 1명 이상인 경우, 농림축산업에 소요된 가구전체의 비용을 합산하여 기입함.									
지출항목	할목 예 시			연진	간품 <mark>목</mark> 별	비용			
재료비	종자및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소동물비, 사료비, 기타양축비, 양잠비, 기타재료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노무비	지불임금(남자, 여자)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영농광열비(유류대 포함), 수선비, 농기구비, 수리비, 임차료, 농작업 위탁수수료, 농 업부문 조세부담금, 농업부문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농기계 할부금, 영농잡지출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판매 및 관리비	도정료, 농업보험료, 농산물판매수수료, 농산물판매용 자재비, 생산관리비, 기타지출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 고가(高價의 농기계를 **일시불로 구입**한 경우 **사용가능연한(내구연수)을 질문**하여 그 **연수(年數)만큼** 나누어서 기입함. 예) 트랙터를 일시불 1000만원에 구입하여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경우 100만원으로 기재
- ※ 감가상각비는 농기계를 일시금으로 구입한 것의 감가상각비를 기재함.
- ※ 영농광열비는 벼·고추 등 농작물 말리기, 비닐하우스 조명 및 난방 등.
- ※ 수리비는 논밭에 물을 대는 비용임.

5-4.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농·임산물 생산과 가축사육에 소요된 연간 총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연간 총비용(E)
	<b>연간</b> 입역 천 백 십 일
5-5. 농림축산물의 자가소비액, 판매액, 농업잡수입, 총비용 등을 고려할 때, 2019년 1년 (2019.1.1~12.31) 동안 귀 가구의 농림축산업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연간 순소득 (A+B+C+D-E)
→ 농림 축산업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문 6) 어업 경영주

[보조기	입란 6-a] 2019년 1년(2019.1.1~12	.31) 동안 역	<b>년간</b> 판매 수	-입, 자가소ㅂ	비액, 이전소	비액			
	※ 용어 설명은 5-a와 동일	함.							
분류	예 시	종류	판매량 (a)	자가 소비량 (b)	이전 소비량 (c)	판매단가 ( <b>천원</b> ) (p)	판매수입 <b>(만원)</b> (A=a*p÷10)	자가 소비액 <b>(만원)</b> ( <b>B</b> =b*p÷10)	이전 소비액 <b>(만원)</b> <b>(C=</b> c*p÷10)
어로 어업	어선, 어구, 어망 등을 사용하여 어류, 갑 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 해조 류 등을 포획·채취하는 것 (※ 해녀의 채취활동 포함)								
양식 어업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 물, 해조류 등을 기르는 것								
수산 가공업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 물, 해조류 등을 가공하는 것								
	총계								

6-	6-1.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출하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은 얼마였습니까?							
	수산물 판매수입 (A)	자가소비액 (B)	이전소비액 (C)	합계(A + B + C)				
연 간 총	만 <b>원</b>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면 간 총 실역 일억 천 백 십 일	면 간 총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면 간 총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 재고량은 판매수입에 포함하여 계산

※ 없음 0

6-2.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어업관련 기타잡수입은 연간 총 얼마였습니까?	연간 잡수입 총액(D)
※ 어업잡수입에는 어업소득피해보상금, 어업용폐자재 판매대금 등이 포함됨.	<b>연간</b> 입역 원 백 십 일

[보조기입련	[보조기입란 6-b]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어업활동에 소요된 지출의 세부항목										
※ 가구에서	※ 가구에서 가구원이 어업경영주에 1명 이상 해당하는 경우 어업에 소요된 가구전체의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함.										
지출항목	예시			연긴	<u></u> 총지출	들금액					
어로지출	미끼구입비, 얼음구입비, 소모품비, 남자 및 여자 임금, 전기료, 연료 및 유류비, 수선 유지비, 토지 및 시설임차료, 어선 및 대어구 임차료, 용기대, 단순가공비, 보관비 등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b>만원</b>			
	어미구입 및 종묘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소모품비, 남자 및 여자 임금, 전기료, 연료 및 유류비, 수선유지비, 토지 및 시설임차료, 용기대, 단순가공비, 보관비 등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b>만원</b>			
수산가공지출	자재및원료비, 지불임금, 광열비, 수선유지비, 수산가공수수료, 기타	연간	신억	일억	처	백	십	만원 <sub>의</sub>			

6-3.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어업활동에 소요된 총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연간 총비용(E)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b>만원</b>
6-4. 수산물의 자가소비액, 판매액, 어업잡수입, 총비용 등을 고려할 때, 2019년 1년		연간	순소	<b>≒</b> (A+E	3+C+	D-E)	)
(2019.1.1~12.31) 동안 귀 가구의 어업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 어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연간	MM	olod	÷	ни	Al	만원

## 문 7) 기타 근로소득: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위에 응답한 **소득 외에 다른 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총 얼마였습니까?

	성명	가구원번 호		(	연간	기타	근로소	_득	
		1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b>만원</b>
		2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b>만원</b>
   ※ 문1) ~ 문6)에서 응답한 근로소득 외에 주 1시간 미만의 근로활동으로		3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sub>일</sub> <b>만원</b>
벌어들인 소득		4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sub>일</sub> 만원
※ 순서는 <u>반드시</u>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5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b>만원</b>
		6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b>만원</b>
		7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sub>일</sub> <b>만원</b>
		8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b>만원</b>
		9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sub>일</sub> 만원

		2019.1.1~12.31) 동안 얼마입니까?	세부 항목				금	액		
		2019년 1년 동안 얻은 재산소득 유형별 소득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① 이자(은행, 사채), 배당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b>만원</b>
문 8)	재 산 소	월평균액 ×12를 하고, 일시금 으로 들어오는 경우일시금 금 액을 그대로 기입 예)매월 이자수입이 10만원이고,	② 임대료(월세, 토지임대료 등)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b>만원</b>
		1년에 한번 배당금으로 100만 원을 받는 경우: (10×12)+100= 220만원으로 기입	③ 기 타(자격증 대여 등)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b>만원</b>
			①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군인·교원연금, 보훈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등)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b>만원</b>
		<b>2019년 1년 동안</b> 받은 사회보험 유형별 소득액은?	나 국민연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b>만원</b>
문 9)	사 회 보		└ 특수직연금(공무원, 군인, 교원, 보훈, 별정직우제축)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b>만원</b>
			② 고용보험(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	연간	십억				십	<b>만원</b>
			③ 산재보험(휴업급여, 장해연금, 유족급여 등	연간	십억		처	백	십	마원
문 10)	민 간 보	ਰ <b>2019년 1년 동안</b> 받은 민간보험사	① 개인연금(※ 일시불은 제외)	연간	십억		_ 천	백	십	일 만원
10)		러 서 받은 총 개인연금액은?	② 퇴직연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만원
		2019년 1년 동안 정부로부터 받-	① 장애수당(장애인 연금, 경증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b>만원</b>
		보조금( <b>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제</b> 외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sub>일</sub> 만원
		의 유형별 금액은?	③ 한부모가족지원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문 14)번 문항에 기입	④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연간	십억		천	백	십	일만원
		※ 현물로 받은 보조금의 경우(학	0 0 1 1 0 0 1 1 2	연간	십억		<u></u> 천	백	십	일만원
		비, 보육료 등)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기입함.	⑥ 보육료 지원 (i-사랑 카드, 아이즐거운 카드)	연간	십억		<u></u> 천	백	십	밀만원
		<ul><li>※ ⑦, ⑧, ⑨의 경우 농림부에</li><li>서 지원하고 있는 것 포함</li></ul>	⑦ 아동수당	연간		일억			십	일만원
		※ 기타 정부보조금으로 보기	⑧ 학비지원(농림부 지원 포함)	연간	십억		년 천	백	ㅂ - - - -	일 만원
문 11)	기	외에 수련회비, 노인위생비, 타 자활장려금, 출산장려수당,	⑨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보훈연금 제외	연간	십억		 천		십	일 만원
준 '')	정부보조		⑩ 농어업 정부보조금	연간	십억		 천	백	십	일 만원
		함), 육아돌보미 지원, 노인 장수수당, 직업훈련수당, 교	① 긴급복지지원금	연간	십억				십	일 만원
		통안전공단지원금, 영양플 러스 사업, 보건소지원 물	⑩ 기타 바우처 지원금	연간	십억		 천	백	십	일 만원
		품, 보건소 의료비 지원(5대	③ 근로장려세제	연간	십억		 천	백	십	일 만원
		암, 치매, 인공수정, 체외수 정 등), 자동차세 감면, 교	④ 자녀장려세제	연간	십억		<u>건</u> 천	백	<u></u> 십	일만원
		복비 지원, 수학여행 비용,	⑤ 급식비 지원	연간				백		일 만원
		쓰레기봉투 등이 있음. 이 들은 기타에 포함.	⑥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전기료, 가스비 등	연간	십억 십억		<u>천</u> 처	백	<u>십</u> 십	일만원
			☞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전화, 인터넷 등	연간	십억		천 천	백	습 십	일만원
		※ 주민센터에서 파악하십시오.	® 기타(	연간	십억		<u>신</u> 천	백	<u>입</u>	일만원
문11-1)	지방보조금	<b>2019년 1년 동안</b> 지방정부로부터 받은 그 조금의 금액은?	라 지역형 생계, 지역형 긴급복지지원, 지역형 청 년수당 등	연간	십억 십억					<sup>일</sup> <b>만원</b>
	<u>I</u>	1			곱시	걸씩	신:	켁:	십	리

			① 증여·상속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b>만원</b>
	이 외에 <b>2019년 1년 동안</b> 발생한	② 경조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b>만원</b>	
		기타소득의 유형별 금액은?	③ 보상금(사고보상금, 이주민주거대책비 등)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b>만원</b>
문 12)	기 타 소 득		④ 사고 및 질병 보험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sup>일</sup>
		는 경우 여기서 파악.	⑤ 퇴직금, 사회보험 일시금, 개인연금 일 시금, 보장성 보험 해약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b>만원</b>
		⑥ 동산·부동산 매매차익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b>만원</b>	
		⑦ 기타(복권/경품당첨금, 상품권, 곗돈 등)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b>만원</b>	
문12-1	환급금	<b>2019년 1년 동안</b> 돌려받은 환급금 총액 은:	세금환급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b>만원</b>

※ 없음 0

<b>*</b> 201	<b>※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b> 다음 소득은 얼마입니까?									
	부모나 자녀로부					일억	천	백	십	<b>만원</b>
문 13)	터의         보조금           (현금         및         현물)	<u>※ 일회성</u> 보원	금과 결혼자금 제외 육대가 포함. <u>단, 월급형식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에 기입</u> 리 경우 가구주 기준	자녀	연간	일억	천	백	십	<b>만원</b>
	9개월 미만 동거		1년 동안 <u>9개월 미만 생계를 같이 하다가 분가한 가구원</u> 이 함께 살 때 가지고 들어온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총금액은?				<u>-</u> 천	백	십	<b>만원</b>
	가구원의 소득	집으로 가지고 들	: 귀댁의 <b>가구원으로 새로 들어온지 9개월 미만된 가구원</b> 이 들어온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총금액은? 나 혼수비 등을 제외한 정규적인 소득만을 기입함.		연간	일억 일억	처	백	십	<b>만원</b>
	민 간 보 조 금 (현금 및 현물)	2019년 1년 동인	동안 친척·친지, 친구나 이웃, 복지관, 종교·사회단체(학교 장학금 자녀학자금보조 포함)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환산				<u> </u>			만원
		※ 가구원이 0	나닌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 제외			일억	천	백	십	일
		① 생계급여	<b>2019년 1년 동안</b> 정부로부터 받은 <b>생계급 연간 수급 기</b> 여 수급가구의 연간 수급개월수와 총 금액(현금급여)은?	/월수 개월	연간	일억	천	백	십	<b>만원</b>
			※ 주민센터에서 파악하십시오. ※ 장제급여 및 출산급여 포함							
문 14)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급 여 (맞 춤 형 급 여)	② 주거급여	2019년 1년 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주거급 연간 수급 기여 수급가구의 연간 수급개월수와 총 금액(현금급여)은?	/월수 개월	연간	일억	천	백	십	<b>만원</b>
	(X 6 6 6 1)		※ 주민센터에서 파악하십시오.							
		③ 교육급여	2019년 1년 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교육급 연간 수급 기역 수급가구의 연간 수급개월수와 총 금액(현금급여)은?	/월수 개월	연간	일억	Ď.	백	십	<b>만원</b>
			※ 응답자의 협조를 얻어 교육청에서 파악하십시오.							

## IX. 부채. 이자

※ 귀하 가구의 부채 및 이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부항목 금액 (2019. 12. 31기준, 사업용도의 부채는 제외함.) ① 금융기관대출(회사대출, 만원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 포함) 십억 일억 천 백 2019.12.31 기준으로 부채의 형태별 부채액(명의기준)은 ② 일반사채 만원 얼마입니까? 십억 일억 천 백 십 ③ 카드빚 (현금서비스, 카드론, ※ 명의기준 만원 대환대출 미상환금, 구입한 ※ 주거부채, 영농부채도 파악함. 자동차 카드 할부) ※ 카드 할부구매는 '③카드빚'에 포함하고, 십억 일억 처 백 현금 할부구매는 '⑤외상 할부구입, 미리탄 곗돈에 포함 채 ※ 친인척에게 돈을 빌린 경우, 문 1) 형 태 만원 ④ 전세(임대)보증금(받은 돈) 이자가 있으면 '②일반사채'에 기입하고, 이자가 없으면(무이자) '⑥기타부채'에 기입함. 십억 일억 백 천 ※ 자동차 할부구매의 경우, ⑤ 외상, (자동차 등)할부 구입, 카드할부이면 '③카드빚'으로 기록하고, 미리탄 곗돈 금융기관 대출이면 '⑤외상, (자동차 등)할부 구입'으로 기록 만원 ※ 밀린 월세, 교통인전공단지원대부금, 사회보험 연체금 등은 ※ 미리 탄 곗돈의 경우 향후 부어야 '⑥기타부채'에 기입함. 하는 금액만 기재 십억 일억 천 백 ※ 세부항목별로 부채가 없는 경우, '0' ⑥ 기타부채( 만원 십억 일억 처 백 ① 1년 동안 거주하였던 2019년 1년(2019.1.1~12.31) 동안 부채에 대해 지출한 연간 만원 주거관련 부채의 연간이자 이자는 연간 얼마였습니까? 십억 일억 천 백 십 이자 문 2) ※ 명의기준 ※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고 있는 경우, ② (주거이자 제외) 기타 원금을 제외한 '<u>순수이자'</u>만 기입 여가 만원 연간이자 ※ 연체한 경우, '0' 십억 일억 백 문 3) 부 채 용 도

<sup>※</sup> 없음 0

# X. 재산

※ 귀 가구의 가구원이 보유한 전체 재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9.12.31 기준,	명의기준으로 조사하며,
가구원명의의 사업장	<b>(가게)</b> 도 포함된다.)

세부항목 금액

711	E 977 /1 H	경(/ <b>[기</b> ])로 포함된다.)								
		2019.12.31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소유부동산의 유형별 가격(현시가기준)은?	①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1)	소 유 부 동 산	※ 거주하고 있는 집은 'VI 주거'에서 파악 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제외.	② 주택외 건물(가족명의의 사업장(가게) ·창고·상가·콘도·별장·오피스텔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어졌으므로 여기시는 세되.	③ 토지(택지, 논, 밭, 임야 등), 양식장, 기타부동산	십억	일억	처	백	십	일	만원
	2019.12.31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① 가게, 사업장 등의 전세보증금 준 것, 점유부동산의 유형별 가격은? 비동거가구원의 전세보증금 등				일억	천	백	십		만원
문 2)	부 동 산	※ 거주하고 있는 집은 'VI 주거'에서 파악 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제외.	② 기타(권리금, 사업설비, 공장기계, 가게물건, 비닐하우스시설, 양식장 등)	십억	일억	· .	<u>п</u>	십		만원
			① 예금(저축예금, 청약예금, 정기예금 등)	십억		<u></u> 천	백	십	일	만원
		<b>2019.12.31 기준으로</b>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② 적금(정기적금, 연금형 적금, 종신보험,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십억		- C 천	백	십	일	만원
문 3)	금융자산	유형별 가격은?	③ 주식·채권·펀드(적립식, 거치식)	십억		천	백	십	일	만원
		※ 가구원 전부 파악	④ 불입한(타기 전) 곗돈	십억		 천	백	십	일	만원
			⑤ 기타(남에게 빌려준 돈, 아파트 중도금(계약금) 부은 것 등)	십억	일억	<u>-</u> 천	백	십	일	만원
			① 동력탈곡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b>2019.12.31 기준으로</b> 보유하고 계신 농기계의 유 형별 가격은?	② 경운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4)	농 기 계		③ 콤바인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기타에는 살포기, 이앙기, 미증기(도정기), 보행관리기, 로터리 등이 포함됨.	④ 트랙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18097I, 199 3VI 188.	⑤ 기타( )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① 소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b>2019.12.31 기준으로 (</b> 판매하지 않고) 사육하고	② 돼지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무 5)	농축산물	이느 노츠사무이 으쳐벼 가져야?	③ 닭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0762	   ※ 애완용 및 식용 가축 제외	④ 재고농산물	십억		천	백	십	일	만원
		· 에 대 이 중 그 이 기 가 제되	⑤ 기타( <u>)</u> ※ 유실수 포함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b>2019.12.31 기준으로</b> 소유하고 계신 <b>비영업용</b> 자동	차의 대수와 가격은?         보유대수         단위	십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6)	자 동 차	<ul> <li>※ 자동차 보유대수 기준은 명의기준입니다. 여</li> <li>자동차가 아니며, 가구원의 명의로 된 자동</li> <li>※ 자동차 모델, 연식별 가격은 별책을 참조하</li> </ul>	차를 현재 타고 있지 않아도 그 자동차는	를 소유	우하고	있다민	별, 이분	= ⊐		구의
			① 운동클럽 등의 회원권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7)	기 타 재 산	<b>2019.12.31 기준으로</b> 위의 재산 이외의 소유하고 계신 재산의 유형별 가격은?	② <b>영업용 자동차</b> ·자동차 번호 값, 오토바이·선박, 굴삭기(포크레인), 트럭 등 운송 및 생계수단	십억		 천	백	십	의	만원
	세 건	기단 개단에 비중된 기석단(	③ 귀금속, 골동품, 상품권 등	십억		전 천	백	십	일	만원
			④ 기타( )	십억		 천	백	십	일	만원
		1		:	- ':		- 1;			

※ 없음 0

## XI. 생활여건

#### 문 1) 2019년 1년 동안 귀댁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있다	없다	비해당
2)	<b>2019년 1년 동안</b> 돈이 없어서 <b>2</b> 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1	2	3
¥	<b>2019년 1년 동안</b> 돈이 없어서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1	2	
타	<b>2019년 1년 동안</b> 돈이 없어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1	2	
라	<b>2019년 1년 동안</b> 돈이 없어서 자녀(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적이 있다.	1	2	3
u)	2019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1	2	
H)	2019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1	2	
4	<b>2019년 1년 동안</b> 가구원 중에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다.	1	2	
(i)	<b>2019년 1년 동안</b> 연속 6개월 이상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 당한 경험이 있다.	1	2	3

#### 〈 유의사항 〉

- ※ ⑦ 문항의 경우, 2019년 1년 내내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혹은 '무상'인 경우 '③ 비해당'에 응답합니다.
- ※ ഈ 문항의 경우, <u>자녀가 없거나</u> 혹은 자녀가 '<u>미취학'</u>, '<u>대학원생(석·박사)</u>'인 경우 '③ 비해당'에 응답합니다.
- ※ ④ 문항의 경우, 2019년 이전에 신용불량자로 되었던 사람이 2019년 동안에도 신용불량자의 상태로 있었다면 '① 있다'에 응답합니다.
- ※ ⊙ 문항의 경우, 2019년 1년 내내 의료급여 혹은 국가유공자 무료진료만을 받는 가구는 '③ 비해당'에 응답합니다.

#### 문 2) **2019년 1년 동안**에 귀댁은 식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거부
② <b>2019년 1년 동안</b>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b>떨어졌는데도</b> 더 살 돈이 없었다.	1	2	3	4
② 2019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사(다양한 식품을 충분한 양으로)를 할 수가 없었다.	1	2	3	4

	구 분	그렇다	아니다	모름/거부
G.	2019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귀하 가구 내 성인들이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습니까?	① → ② 로 갈 것	② → ①로 갈 것	③ →만로 갈 것
4	(中에서 ①번 응답자만)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① 거의 매월 ② 몇 개월 동안(매월은 아님) ③ 1-2개월 동안	1	1	
9	2019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드신 적이 있습니까?	1	2	3
H	2019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픈데도 먹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1	2	3

##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로 변경되면서,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급여별 각각의 기준 중위소 득 이하의 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맞춤형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되며, 그 밖에 의료급여 특례, 자활특례 등 특례도 포함되며, 가구원 중 일부만 수급하는 가구도 수급가구로 간주합니다.

7-11/ 11		
문 1) 국	귀댁은 2019년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를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mark>문1-2)로 갈 것</mark> ② 없다 → <mark>문2)로 갈 것</mark>	
	〈 유의사항 〉 ※ 공식적인 서류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이미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2019년에 신청한 적이 없으면 '②없다'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1-1) <b>(문1)의 ①번 응답자만)</b> 귀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를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②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③ 주거비를 지원받기 위해 ④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⑤ 취업알선, 창업 등 자활지원을 받기 위해 ⑥ 기타(적을 것 :	
	₩ /19(¬₽ X :	
<u>1</u>	문 1-2) <b>(문1)의 ①번 응답자만)</b> 신청한 결과 귀댁은 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까?	
	①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모두 받게 되었다 → <mark>문2)로 갈 것</mark> ②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일부만 받게 되었다 → <mark>문1-3)으로 갈 것</mark> ③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 <mark>문1-3)으로 갈 것</mark>	
	《 유의사망 》 ※ 2019년 1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단, 급여신청을 2019년 12월에 하였고 선정은 2020년에 되었지만, 선정이 되면서 2019년 12월까지의 급여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받았다면 2019년에 선정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중간에 탈피가 되었더라도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 를 들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모두 받고 있다가 2019년 중 생계급여만 못 받게 되었더라도 ①로 응답합니다.	
<u>;</u>	문 1-3) <b>(문1-2)의 ②, ③번 응답자만)</b>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1-3-1) 문 1-3-2) 문 1-3-3) 문 1-3-4) 문 1-3-4) 대표	
	① 자동차가 있어서 ③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④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⑥ 기타(적을 것 :) ⑨ 잘 모르겠다.	

			1-1)	문 :			문 1-4-3)		문 1-4-4	1)
			급여	의료			주거급여		교육급이	Ħ
	부양의무자(같이 실 빚을 내어서 생활 민간단체의 도움 이전보다 더 절약하 저축 등 있는 재산· 공공기관 프로그램( 본인이 스스로 벌어 기존에 받던 '가구워 기타(적을 것:									
문 2) 귀댁은 2019년	년 1년 동안 국민기최	생활보경	장 급여(맞춤	흥형 급	여)를	받은 경험	헠이 있습니	까?		
① 바스 저이	있다 → <b>문2-1)로</b>	가기	-							
<del>-</del>	었다 → <b>KII-1.근로</b> 없다 → <b>XII-1.근로</b> ?		쿠 갈 게							
( 유의사학	장 〉 1년 동안 생계급여, 의료			여 중 현	한 개라	도 받은 경	험이 있으면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00
문 2-1) <b>(문2)의 ①</b> 번 오.		1년 동연	<u>.</u> 급여를 받	날은 경험	험이 :	있다면, _	1 기간을 하	해당 급여	여만 응답해	주십시
문 2-1-1) 생계급(		٦ .						٦.		1
첫 번째	2 0 1 9	년 -		월	~	2 0	1 9	년 -		월
두 번째	2 0 1 9	년		월	~	2 0	1 9	년		월
세 번째	2 0 1 9	년		월	~	2 0	1 9	년		월
문 2-1-2) <b>의료급</b> (	겨									
첫 번째	2 0 1 9	년		월	~	2 0	1 9	년		월
두 번째	2 0 1 9	년		월	~	2 0	1 9	년		월
세 번째	2 0 1 9	년		월	~	2 0	1 9	년		월
문 2-1-3) <b>주거급</b> (	 겨	_								
첫 번째	2 0 1 9	년		월	~	2 0	1 9	년		월
두 번째	2 0 1 9	- 년		월	~	2 0	1 9	- 년		월
세 번째	2 0 1 9	- 년		월	~	2 0	1 9	- 년		월
문 2-1-4) <b>교육급</b> (	M								Li	1
군 2-1-7 <i>) 교육</i> 급( 첫 번째		1.3		월		2 0	1 0	년		<u>0</u> 1
久 번째 두 번째	2 0 1 9	년 - 년		절 월	~	2 0	1 9 1 9	- 년 - 년		월 - 월
		-		절 월	~					-
세 번째	2 0 1 9	년		쳘	~	2 0	1 9	년		월
〈 <b>유의사</b> 역 ※ 수급과	상 〉 탈피를 반복하였다면 그	기간을 도	2두 응답해 주	십시오.						

			문 2-2-1) 생계급여	문 <b>2-2-2</b> ) 의료급여	문 <b>2-2-3</b> ) 주거급여	문 2-2-4) 교육급여
			수입이 줄어서 실을 그만두게 되 경제적 형편이 나 등으로 인해 소 이 사망해서 구원이 증가해서	어서 빠져서(혹은 도움여 득이 있는 가구원여	이 끊겨서)	······································
〈 <b>유의</b> ※ 생계,		교육 급여 중 중심	간에 탈피가 되었더러	바도,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유를	응답해 주십시오.
7	븐		2	3	4	5
문 2· 생계·		1	2	3	4	5
문 <b>2</b> - 의료·	-3-2)	1	2	3	4	5
문 2· 주거·		1	2	3	4	5
문 2- 교육		1	2	3	4	5
〈 <b>₽</b> 9 ※ 수	<b>기사항</b> 〉 급과 탈피를			수준을 기준으로 응답해 네마츠형 그리지 조		
					<b>12월 말까지 받은 급</b> 니까? 해당 급여만 8	
				문 3-2) 의료급여 3년 후 벗어나기 힘들 것 잘 모르겠다.	문 3-3) 주거급여 이다	문 3-4) 교육급여

문 2-2)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이 <u>2019년 1년 동안</u>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 중 하나라도 <u>받은</u> <u>급여가 있다면</u>, 수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4)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	) 중 <b>12월 말까지 받지</b>	못한 급여가 있
<u>다면</u> , 각 급여별로 탈피하게 된 <b>가장</b> 큰 이유는 무	<del>'</del> 엇이었습니까? 해!	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	시오.
문 4-1)	문 4-2)	문 4-3)	문 4-4)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①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서 ② 가구원이 취업을 하게 되서 ③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이 늘어서 ④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서 ⑤ 친인척이 좀 더 도와주어서 ⑥ 사망, 이혼, 분가 등 가구원수가 줄어들어서 ⑦ 가족의 병이 나아서 ⑧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서 ⑨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변화는 없으나 조. ⑩ 기타(적을 것 :	사결과가 달라져서 _)	₹	
문 5)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여러 <u>싶은 급여</u> 는 무엇입니까? (생계비를 제외하고 하		수급가구에서 벗어나다	더라도 계속 받고
			)

## XII-1. 근로(자녀)장려세제

- ※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단위로 지급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 \*\* 자녀장녀세제는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 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 미만)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188 의대 / · · · · · · · · · · · · · · · · · ·	9 <del></del>		
			문 1-1) 로장려세제	문 1-2) 자녀장려세제
문 2) 귀	니댁은 <b>2019</b> 년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급 <sup>0</sup>	<sup>넊를</sup> 신청하신 적이 있 <sub>다</sub>	슼니까?	
	② 근로장려금만 신청했다 →	문2-1)로 <u>갈 것</u> 문2-1)로 갈 것 문2-1)로 갈 것		
	〈 <b>유의사항</b> 〉 ※ 5월에 신청을 못한 경우, 6-11월 동안 기간	· 후 신청을 받습니다. 기2	· 후 신청한 경우도 신 <sup>:</sup>	청한 것으로 응답합니다.
<u> </u>	문 2-1) 귀댁은 2019년에 근로(자녀)장려금	R을 받으셨습니까 <b>?</b>		
	② 근로장려금만 받았다 →	<sup>22-2)로 갈 것</sup> <sup>22-4)로 갈 것 <sup>22-4)로 갈 것</sup> Ⅲ. 가구의 복지서비</sup>	스 이용 으로 갈	 켌
	〈 <b>유의사항</b> 〉 <b>※ 있다고 응답한 경우 기타 <u>정부보조금란</u>의</b> <b>※</b> 5월에 신청한 경우 9월 말까지 급여가 지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9	급되며, 기간 후 신청을 한	경우는 지급시점이 연	기될 수 있습니다. 기간 후

문 2-	· ① 일할	의욕이	매우	감소되었	다 ②	) 일할	의욕이	약간	영향을 미쳤 감소되었다	7	의욕에	변화가	없었다
	0		, –			, – –			증가되었다				

##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 문 1) 2019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③ 생계비(혹은 생계보조수당) 지원	1	2
④ 의료비 지원	1	2
④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1)	2
<ul><li>관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li></ul>	1)	2
⑩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1	2
⑪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1	2
④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자활근로	1)	2
◎ 상담서비스	1)	2
③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을 위한 각종 대출, 융자	1	2
③ 개인발달계좌(자산형성프로그램)	1	2
⑦ 권익보장 지원(공공후견서비스 등)		

####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
 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유의사항 〉

- ※ ⑦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수당(경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지원(양육비), 긴급복지지원(긴급생계급여), 가정위탁금, 소년소녀가장보호비, 근로장려세제 등 생계비 보조를 목적으로 보조하는 현금을 말한다(국민연금,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소득은 포함 안 됨. 보육료 지원비, 노인교통비, 학비지원, 바우처 지원금 등 용도가한정된 지원은 포함 안 됨). 쌀이나 식료품 등은 생계비 지원에 해당하지 않고 ㈜의 물품지원에 체크하도록 한다.
- ※ ④ 의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의료급여,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종교(시민)단체에서 의료비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현금, 현물, 재활서비스 모두 포함).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를 포함하되,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상의 혜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의료비 지출을 위한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지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 ※ ④ 주택 관련 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제공(일부 보조)하거나, 사회복지관련기관, 종교(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집수리, 도배 등의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 개조를 말한다.
- ※ ②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자활근로: 노인일자리사업, 희망근로, 자활 공공근로를 포함한다.
- ※ ◎ 상담서비스: 고민 및 갈등, 정신건강 문제, 약물 및 알코올 문제, 학대 및 가정폭력 문제, 아동의 문제 등과 관련된 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 를 말한다.
- ※ ②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을 위한 각종 대출, 융자: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국가가 대출해주거나 국가의 신용보증을 통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지원융자,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출, 장애인 자립자금, 저 소득층 생업자금, 저소득층 창업자금,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근로자 생계보증 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이 있다. 단,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등 주택 관련 대출은 포함하지 않는다.
- ※ ② 개인발달계좌: 개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하여 적립하는 제도를 말하며, 가입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보건복지 부의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서울시의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등이 포함된다.

다음은 바우처서비스 이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바우처란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자바우처는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무 2)	2019녀 1녀가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해 보시	전이	있습니까?
<u> </u>		911717191—2		I	MH-1/11

(I) 예 → <b>군/=[] 중리 우. 군3/</b> (도 월 월	① 예	→ 문2-1) 응답	후, 문3)으로 갈 3
---------------------------------------	-----	------------	--------------

② 아니오 → <del>문3)으로 갈 것</del>

#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2019년 1년간 다음 각각의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코인돌봄종합서비스	1	2
④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	2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1	2
④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	2
<ul><li>⑨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이용권)</li></ul>	1	2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제도	1	2
④ 아이돌봄지원	1	2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1	2
③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1	2
③ 발달장애인지원(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1	2
에너지바우처	1)	2
🗈 기타 바우처서비스(적을 것:)	1	2

#### 〈 유의사항 〉

- .※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말하며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포함한다.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④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제도: 임신이 확진된 임산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 ④ 아이돌봄 지원: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하 원 등 돌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영유아 부모에게 보육기관 및 유치원의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말한다.
- ※ ③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기존 항목이었던 '발달재활서비스 사업'과 '언어발달지원'을 통합하여 '장애아동가족지 원'문항 신설하였다.
- ※ ③ 발달장애인지원(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주간 활동서비스'는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 ※ ⑦ 에너지 바우처: 국민기초생활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가구 내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임산부가 있을 경우 난방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함. 국가바우처 통합카드인 '국민행복카드' 대상 바우처이다.
- ※ ④ 기타 바우처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정실질환자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고위험군 건강증진서비스,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부모학교 서비스 등의 지역개발형 바우처가 있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일상생활이 힘든 <u>65세 이상 노인</u> 및 <u>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등)을 가진 65세 미만 대상자</u>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목욕, 배설 등) 또는 가사지원(세탁, 청소 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문 3)	2019년 1년간 기구원 중에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은 가구원이 있습니까? (단, 5등급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① 예 → 문3-1), 문3-2) 응답 후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으로 갈 것
- ② 아니오 →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으로 갈 것
- 문 3-1) (문3)의 ①번 응답자만)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귀댁이 지불하신 금액은 월단위 얼마였습니까?



문 3-2) (문3)의 ①번 응답자만) 2019년 1년 동안 급여(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떤 종류의 급여를 받으셨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급여(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③ 방문요양(목욕, 옷입히기, 취사, 주변정돈 등)	1	2
④ 방문목욕(차량 이용 목욕 제공)	1	2
🗈 방문간호(간호사 방문 간호,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1	2
관 주·야간보호(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1)	2
만기보호(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 보호)	1)	2
⑪ 기타재가급여(휠체어, 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복지용구)	1	2
④ 시설급여(장기요양보호시설 이용)	1	2
⊕ 특별현금급여(특별한 사유로 가족이 보살피는 경우)	1	2

##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만65세 이상 어르신(노인)이 있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조사대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문 1) 2019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② 기초연금 지원	1	2
④ 의료비 지원	1	2
🗈 노인 무료 급식(본인부담금 없음)	1)	2
말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1	2
⑪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1	2
⊕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1	2
④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	1	2
◎ 이동편의 서비스(병원 동행 등)	1	2
③ 주·야간보호 서비스(일정시간 복지관 등에서 보호해주는 것)	1	2
③ 노인일자리사업	1	2
🔊 사회교육 서비스(한글교실, 생활요가, 노래교실 등)	1)	2

#### 〈 유의사항 〉

※ <u>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u>
 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유의사항 〉

- ※ ① 의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의료급여 및 의료지원,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종교(시민)단체에서 의료비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현금, 현물, 재활서비스 모두 포함). 노인 안검진 및 개안 수술,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상의 혜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의료비 지출을 위한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지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 ※ ⓒ 노인 무료 급식(본인부담금 없음): 지자체 노인결식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무료로 급식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노인이 일부 자비를 부 담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 ⓒ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예'라고 응답한다.
- ※ ◎ 이동편의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동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거나, 간병인 등이 이동 동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노인이 혼자 일반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나, 교통수당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할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 ※ ② 노인일자리사업: 만60세~64세의 예외적 참여를 허용하나,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자체를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만 응답하므로 만60~64세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는 응답하지 않는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지방문화원, 지역NGO, 청소년수련관 등이다.

##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만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없다면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아동(자녀)은 응답자 본인의 친자녀뿐만 아니라 조카, 손자녀 등 만0~17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 가구원은모두 해당됩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문 1) 2019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⑦ 아동수당	1	2
④ 공공어린이집(주간보호 및 특별활동)	1	2
영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양육수당 포함)	1)	2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성격, 정서문제, 독서지도 등)	1	2
⑪ 방과후돌봄 서비스(지역아동센터 등)	1	2
⑪ 무료급식(급식지원 포함)	1	2
④ 학비 지원	1)	2
<ul><li>예 예체능 교실(컴퓨터, 미술, 음악, 체육 등)</li></ul>	1)	2
③ 문화활동(문화유산답사, 연극, 영화, 견학, 방학 중 캠프 등)	1	2
③ 가정봉사・아이돌봄 서비스	1)	2
③ 영유아보충식품지원(영양플러스사업 포함)	1)	2

#### 〈 유의사항 〉

- ※ <u>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u>
   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서비스의 유형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의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응답하다

#### 〈 요의사항 〉

- ※ ⑦ 공공어린이집: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담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을 말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서울형/부산형 어린이집은 모두 공공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공공어린이집에 해당한다.
- ※ ⓒ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양육수당 포함): 가구의 소득 혹은 아동의 출생순위 등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 비 보조를 말한다. 직장어린이집의 보육료 할인 (직장어린이집에서의 보육료 할인이 직장어린이집 자체에서 운영·지원하는 것이라면 공공부 문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으나,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에 의해 할인을 받는 것이라면 포함된다.
- ※ № 무료급식(급식지원 포함): 취학아동뿐만 아니라 미취학아동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므로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급식지원도 포함된다.
- ※ 학비 지원: 초・중・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검정고시 학습비, 방과후교실 등록비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비 지원과 장애영유아 무상교육 은 '④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에 해당된다.
- ※ ④ 예체능 교실(컴퓨터, 미술, 음악, 체육 등): 예체능교실은 미술, 음악, 체육 교육 및 컴퓨터 교육 등 다양한 예체능프로그램을 말한다. 예를 들어 바우처서비스인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가 포함된다.
- ※ ④ 가정봉사·아이돌봄 서비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서비스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을 통해 양육지원을 받는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에 해당한다.

다음 문2)~문6)은 만0~17세 이하 아동(자녀) 각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반드시 아래 응답지에 개별 아동(자녀)별로 아동의 가구원 번호에 따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4. 1. ~ 20 그 아동(자녀)은 등	<u>안에</u> 새로 기					=)0
		황과 15차년도에				재해주십/	(오.)	
	있다 → 문 2-1	)로 갈 것	다 → 문 3)	으로 갈 것	1			
	(문2)의 ①번							

아동(자녀)의 가구원 번호 (※ 2쪽의 가구원 번호와 일치하도록 기재하시오)	아동(자녀) 가구원의 이름	문2-1) 체중	문2-2) 선천성 기형 및 질환

- 문 3) 다음은 공적인 학교교육 이외의 학원, 과외, 학습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댁의 아동(자녀) □□□○ <보기>와 같은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모든 아동(자녀)을 가구원 번호에 따라 차례대로 기재한 후 질문합니다. 사교육과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자녀)은 이용여부에 '② 안한다'로 기재한 후 다른 아동에 대해 질문합니다.)
- 문 4) 귀댁의 각각의 아동(자녀)이 이용하는 사교육·보육기관을 아래의 <보기>에서 주로 이용하는 순서대로 3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 문 5) 귀댁에서 각각의 아동(자녀)에게 든 사교육비는 한 달 평균 얼마입니까?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다음의 응답지에 아동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유의사항 〉

- ※ 한 아동(자녀)이 위 문4)에서 응답한 사교육기관보다 더 많은 사교육기관(4개 이상 이용자)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용하고 있는 모든 사교육기관의 이용비용과 교재비, 도구실습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를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 모든 비용은 가구에서 실제 지출한 실비만 포함시킵니다.
- ※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없음 = 0000
- 문 6) 귀댁에서 각각의 아동(자녀)에게 든 보육비는 한 달 평균 얼마입니까?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다음의 응답지에 아동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유의사항 〉

- ※ 한 아동(자녀)이 위 문4)에서 응답한 보육기관보다 더 많은 보육기관(4개 이상 이용자)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용하고 있는 모든 보육기관의 이용비용과 교재비, 도구실습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를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 모든 비용은 가구에서 실제 지출한 실비만 포함시킵니다.
- ※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없음 = 0000

구 분	<보 기>					
어린이집 및 유치원	① 국공립(국립·시립·구립 등)어린이집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③ 민간어린이집(법인·단체등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포함) ④ 가정어린이집(개인가정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⑤ 직장어린이집(사업주가 설치한 어린이집) ⑥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⑦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민간학원 및 사교육	8 학원 9 개인·그룹과외	⑩ 학습지(온라인 학습지 포함)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	① 방과후 교내보충학습(만6세 이상이 학교 내에서 자발적으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보충학습 및 특기 지도 등을 하는 경우) ② 방과후 교실(만6세 이상이 학교가 아닌 사회복지관, 유치원 등에서 보육이 아닌 특기 지도, 보충학습 등을 하는 것)					
기타	(3) 친·인척(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만 해당) (4) 이웃(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만 해당) (5)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 돌보미 (6) 민간 아이 돌보미 (7) 기타(적을 것:					

## 문3)~문6) 응답지

아래 응답지에 모든 아동(자녀)을 가구원 번호에 따라 차례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구원번호 및 이름은 2쪽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아동(자녀)의	아동(자녀) 가구원의 이름	문3) 이용여부		문4)	문5) 한 달 평균 사교육비	문6) 한 달 평균 보 <del>육</del> 비		
가구원 번호		한다	안한다	이용기관	(부대비용 포함)	(부대비용 포함)		
				Α	월평균	월평균		
		①	2	В	만원	만원		
				С				
				Α	월평균	월평균		
		①	2	В	만원	만원		
				С				
				Α	월평균	월평균		
		①	2	В	만원	만원		
				С				
				A	월평균	월평균		
		①	2	В	만원	만원		
				С				
				Α	월평균	월평균		
		1	2	В	만원	만원		
				С				
				Α	월평균	월평균		
		1	2	В	만원	만원		
				С				

##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가구에 장애인(등록 장애인, 비등록 장애인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없다면 다음 페이지의 XVII. 가족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조사대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문 1) 2019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⑦ 장애인연금(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1	2
④ 장애수당(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	1	2
④ 장애아동수당	1	2
의료재활서비스	1	2
⑪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등)	1	2
ꂌ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	1	2
④ 이동편의 서비스(병원 동행 등)	1	2
④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1	2
②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1	2
③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 서비스	1	2
⑨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1	2
📵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관련 프로그램(학습지원 서비스 등)	1	2
화 자동차 관련 지원	1	2
᠗ 권익보장 지원(공공후견서비스 등)		

#### < 유의사항

※ <u>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u>
 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유의사항 〉

- ※ ⓒ 장애아동수당: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정도를 고려,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매달 일정 지원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②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와는 별개의 재도임에 주의한다.
- ※ ② 의료재활서비스: 장애인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장애인 등록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및 보장구 지원 및 할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등이 포함된다.
- ※ ③ 이동편의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동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거나, 활동보조인, 간병인 등이 이동 동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장애인이 혼자 일반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나, 교통수당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할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 ※ ⑥ 주택관련 서비스: 공공기관에서 제공(일부 보조)하거나, 사회복지관련기관, 종교(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집수리, 도배 등의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 개조를 말한다.
- ※ ④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를 의미하며,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도 포함된다.
- ※ ③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서비스: 직업재활시설 및 보호작업장 이용,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사회복귀훈련, 사회적응훈련, 자립생활훈련,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자판기·매점 등 사업권 제공 등을 말한다.

## XVII. 가족

문 1) <u>2019년 1년간</u> 귀댁에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한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우선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기구워 외의 경우에는 직계형족 1초 이내까지만 포함하니다.)

1순위 2순위	

문 2) 다음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어떻게 지내고 논쟁을 해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2019년 1년간** 귀댁은 어떠하였습니까?

(※ 독신가구이면서 직계혈족 1촌이 없는 경우 '비해당'으로 표시하고 '추가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십시오. 비가구원인 직계혈족 1촌이 있는 1인 가구(독신가구)이지만 지난 1년간 상호 교류가 전혀 없었다면, '비해당'으로 표시합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비해당
⑦ 우리 가정에서는 의견충돌이 잦다.	1	2	3	4	5	0
과 가족원들이 가끔 너무 화가 나서 물건 등을 집어 던진다.		2	3	4	5	0
☞ 가족원들이 항상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한다.		2	3	4)	5	0
환 가족원들이 자주 서로를 비난한다.		2	3	4)	5	0
⑩ 가족원들이 가끔 서로를 때린다.		2	3	4	5	0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